

리걸 임팩트 연구

2023 - 02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성소수자 학생을 중심으로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 성소수자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남미자(경기도교육연구원 / 연구원)
송지은(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 / 변호사)

연구원 :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 변호사)
이도경(한국성폭력상담소 / 변호사)
장서연(공익변호사재단 공감 / 변호사)
정명화(공동법률사무소 이채 / 변호사)
정민석(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 / 이사장)

연구보조원 : 김세희(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 / 자원활동가)
김주현(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 / 자원활동가)
임두리(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 / 자원활동가)

본 연구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리걸임팩트 법제정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3. 주요 용어 해설	5
II. 본론	11
1.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	13
가. '포용적인 교육' 개념의 근거와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포용적 교육	13
나.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	15
다.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2
2. 성별분리 시설	26
가. 성별로 구분된 학교시설과 성소수자 학생의 배제	26
나. 현행 법령의 한계와 문제점	45
다. 해외 사례	49
라. 개선안	54
3. 학교폭력 및 학교 안전	59
가.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59
나. 해외 사례	76
다. 법제도 개선방안	83
4.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93
가. 성소수자 학생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	93
나. 현행 법제도 : 입학에서 졸업까지	96
다. 한계 및 문제점	129
라. 해외 사례	135
마. 법제도 개선방안	144

III. 결론	153
IV. 개정안	159
1.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	161
2. 교육기본법	164
3. 초·중등교육법	166
4. 교육시설법	169
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172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3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8
8. 학교체육 진흥법	182
9.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183
1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84
11. 학교건강검사규칙	187
1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88
1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89

〈표 1〉 응답자의 연령대	27
〈표 2〉 응답자의 성 정체성	28
〈표 3〉 성 정체성을 알고 있거나 어떤 성별로 인식되는지 여부	28
〈표 4〉 조사 응답자가 다니는(다녔던) 학교의 형태	29
〈표 5-1〉 학교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 - 정체성별	30
〈표 5-2〉 학교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 - 학교유형별	31
〈표 6〉 성 중립 화장실이 있다면 이용할 마음이 있는지	34
〈표 7〉 탈의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36
〈표 8〉 기숙사가 나의 성별정체성대로 배정이 되었는지 여부	38
〈표 9〉 집담회 참여자 기본정보	40

[그림 1]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	65
[그림 2]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 및 유의사항	68
[그림 3]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내용	90
[그림 4]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제시된 사안조사 유의사항	92
[그림 5]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다문화, 탈북학생의 보호와 지원내용	93
[그림 6]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제시된 사안조사 유의사항	189
[그림 7]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다문화, 탈북학생의 보호와 지원내용	19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용어 해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3. 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장에 의해 발의되었다¹⁾. 해당 폐지조례안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전환이나 남성,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에 대해 정상이라고 교육하도록 하여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게 된다’는 등 성소수자 혐오 그 자체를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2022. 1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에 적용되고, 교과용 도서 개발 등에 반영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교육부의 보도자료에는 새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용어 삭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동성애와 성전환 관련 내용 제외, 낙태 관련 내용 삭제,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 삭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재생산권 용어 등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시민사회 및 교육현장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은 명백히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하고, 교육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크게 후퇴시키는 차별적 주장들에 대해 즉시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 12.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거의 바꾸지 않은 채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2021. 9.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 교직원, 상담사, 활동가 등 41명을 인터뷰 한 보고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을 공개하면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중·고교 교과서에 담긴 동성애 혐오 표현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인 이후 20년이 넘는 지금에도, 여전히 한국의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 해당 폐지조례안은 2022. 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서울시의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수리, 발의하였다. 그러나 해당 폐지조례안은 개정취지에 비추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장의 해당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역시 전부 폐지조례안이 주민조례청구로 충남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가장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학생인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2023. 11. 현재 기준)

2020. 12.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의 초안에서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보장이라는 추진과제의 하위 항목으로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이 명시되었는데, 초안 발표와 함께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민원을 제기하며 교육청 앞으로 혐오문구가 담긴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2018. 5. 여고에 다니던 청소년 성소수자 A가 학교에서 아우팅 된 이후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겪고,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학생의 부주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말을 들은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 1. 교육부는 2015년 발표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잘못된 인식을 담은 것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 단체의 수정 요구에 대하여 수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2014.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성소수자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 발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200명 중 98%가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104명의 학생 중 86.5%는 '교사에게 알린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알리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71.1%)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012. 1. 학생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본 연구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의 후퇴를 막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에서 삶의 소중한 한 시기를 살아나가고 있을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선행 연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에서 2015년부터 수집해 온 상담 기록을 통해 지금 한국의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뒤,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여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기본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관련된 현행 한국 법령, 학교와 관련된 교육부 지침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관련 법제도 리스트를 만든 뒤, 그 중 실질적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을 삽입·수정할 수 있는 법령 및 지침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학교폭력과 안전’,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의 세 가지 큰 주제에 집중하여 총 13개의 법령 및 지침 내용을 검토하고, 유사한 해외 법제도를 조사·번역하여 분석하였으며, 청소년 성소수자, 교사, 법률가, 정책연구자 등과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연구진이 제시하는 대안에 관하여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학교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86건의 유효응답을 수집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9명의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과는 추가적으로 온라인 면담(수다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각 주제에 관한 결론으로는 검토한 법령, 지침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3. 주요 용어 해설

다음은 본 보고서에서 사용할 성소수자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설이다. 김지혜 외(2021), 성소수자부모모임(2021),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계재예정)의 보고서에서 인용 및 재인용하였다.

젠더(gender):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중성적인 상태를 말한다. 성(sex)이 보통 남성 성 또는 여성성의 생물학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반면, 젠더는 남성 또는 여성임을 구성하는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²⁾

섹슈얼리티(sexuality): 생애에 걸쳐 인간으로서 존재하게끔 하는 핵심적인 측면으로서, 성별, 성별정체성, 성역할, 성적지향, 에로티시즘, 쾌락, 친밀감, 재생산을 포함한다.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법적, 역사적, 종교적, 영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³⁾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이고 로맨틱하고 정서적인 끌림을 말한다. 성적지향은 성별정체성과는 다르다. 성적지향은 성적 끌림, 성적 행위, 성적 정체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대개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에 대한 끌림을 이성애(heterosexuality)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자신과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에 대한 끌림을 동성애(homosexuality)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여성으로서 같은 성별 또는 성별정체성의 상대에 끌리는 사람을 레즈비언(lesbian), 남성으로서 같은 성별 또는 성별정체성의 상대에 끌리는 사람을 게이(gay)라고 한다. 끌리는 상대의 성별 또는 성별정체성이 자신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사람을 바이섹슈얼(양성애자, bisexual)이라고 한다.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동성애자(homosexual)란 용어가 이성애의 지향을 갖지 않은 사람을 정신장애로 잘못 병리화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⁴⁾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자신의 성별(젠더)에 대해 깊이 느끼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각(자유롭게 선택한 경우라면, 신체의 외양이나 기능을 의료적, 외과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음), 복장, 언어, 태도 등을 포함한 젠더의 표현이 포함된다. 성별정체성은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개인의 성별정체성이 완전히 남성이거나 완전히 여성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성별정체성이 지정된 성별과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젠더플루이드(gender fluid), 젠더퀴어(gender queer) 등으로 부른다. 반면 개인의 성별정체성이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스젠더(cisgender)라고 부른다.⁵⁾

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2023. 11. 15.), 김지혜 외, 2021에서 재인용

3)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2006), 김지혜 외, 2021에서 재인용

4) WHO(2006), 앞의 글(FAQ on Health and Sexual Diversity), 김지혜 외, 2021에서 재인용

5) WHO(2006), 앞의 글(FAQ on Health and Sexual Diversity), 김지혜 외, 2021에서 재인용

성별표현(젠더표현, gender expression): 성별정체성이 자신의 성별(젠더)에 대한 내적인 경험과 이해를 의미한다면, 성별표현(젠더표현)은 자신의 성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말한다. 성별의 표현은 통상 복장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성별에 관한 우리의 감각은 대개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고 사회가 구성한 이분법적인 표현 형태에 맞추어져 있다. 개인이 성별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그의 성별정체성을 언제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⁶⁾

성징(성특징, sex characteristics): 성별과 관련된 신체적 특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생식기, 기타 재생산과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 염색체, 호르몬, 사춘기부터 나타나는 2차 신체 특징이 포함된다. 신체적 또는 생물학적 성징이 전통적인 정의에서 말하는 남성 또는 여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인터섹스(intersex)라고 한다. 이러한 특성이 태어날 때부터 뚜렷한 사람이 있고 살면서 나중에(주로 사춘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⁷⁾

퀴어(queer): ‘이상한, 기묘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7-80년대 이전 서구에서는 성소수자를 비하하고 멸시하는 용어였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전복적인 의미에서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 LGBTQ(IAQ) 같은 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⁸⁾

트랜스남성, 트랜스젠더 남성, FtM(Female to Male): 태어나면서 여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는 사람, 즉 출생 시 지정성별은 여성이지만 성별정체성은 남성인 사람을 뜻한다. ‘FtM’의 경우, “여성에서 남성으로”, 즉 과거에 여성이었다가 지금은 남성이 되었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체적-의료적 차원에서는 호르몬 및 수술 과정에서의 성별 구분을 고려하여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MtF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⁹⁾

트랜스여성, 트랜스젠더 여성, MtF(Male to Female): 태어나면서 남성으로 지정되

6) WHO(2006), 앞의 글(FAQ on Health and Sexual Diversity), 김지혜 외, 2021에서 재인용

7)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2019), 김지혜 외, 2021에서 재인용

8)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명동(계재예정),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지원 FAQ**

9) 성소수자부모모임(2021), **트랜스젠더 성 확정 수술을 위한 의료 정보 가이드북**

었으나,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 즉 출생 시 지정성별은 남성이지만 성별정체성은 여성인 사람을 뜻한다.¹⁰⁾

트랜스젠더(transgender): 넓은 범위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자신을 제3의 성별로 정체화한 사람, 외양이나 특성이 젠더 정형성에서 벗어난 사람, 젠더에 대한 감각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사람 등을 포함한다. 트랜스여성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트랜스남성은 태어날 때 여성으로 지정되었으나 남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트랜스젠더 중에서는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신체가 일치하도록 수술이나 호르몬요법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¹¹⁾

논바이너리(non-binary):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혹은 성별이분법을 거부하는 성별 정체성 또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¹²⁾

젠더퀴어(genderqueer): 성별정체성이 ‘퀴어한’, 즉 성별이분법을 벗어나거나 거부하는 정체성 또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¹³⁾

시스젠더(cisgender): 젠더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일치하는 이, 즉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을 지칭한다.¹⁴⁾

지정성별(sex assigned at birth, assigned sex): 출생 혹은 최초 법적 인적사항 등록 시에 성기 모양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사회로부터 지정받은 성별을 뜻한다.¹⁵⁾

성별위화감,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성별불일치감’이라고도 표현한다. 출생 시 지정성별과 스스로 인식하고 정체화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트랜스젠

10) 성소수자부모모임(2021), 앞의 글

11) WHO(2006), 앞의 글(FAQ on Health and Sexual Diversity), 김지혜 외, 2021에서 재인용

12)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등(계재예정), 앞의 글

13)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등(계재예정), 앞의 글.

14) 지니 게인스버그(2022),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계재예정에서 재인용

15) 성소수자부모모임(2021), 앞의 글

더 당사자가 겪는 불쾌감 또는 위화감과 그로 인한 고통을 뜻한다.¹⁶⁾

젠더 유포리아(gender euphoria): 성별불일치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디스포리아(Dysphoria)’의 반대말. 관련 연구에 따르면(Beischel et al., 2021; Newman, 2018; Menon, 2016) 정신의학에서 유리한 성별불일치감과는 대조적으로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스로 정체화한 성별로부터 느끼는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젠더 유포리아를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성확정수술(gender reassignment surgery, gender affirming surgery):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신체외관과 성특징을 변화시키는 수술. 모든 트랜스젠더가 성확정수술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원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성확정수술은 성별위화감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⁷⁾ 한국에서는 주로 성전환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성전환이라는 용어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보다는 출생 시 지정성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어 성확정수술, 성별재지정수술, 성별적합수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¹⁸⁾

패싱(passing): 개개인이 외모나 옷차림, 목소리와 말투, 행동 등을 통해 특정 젠더 범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예) ‘여성으로 패싱되다’¹⁹⁾

정체화/재정체화: 정체화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대하여 스스로가 인식한 상태 혹은 그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예) ‘초등학교 고학년 썸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했다’ 개인의 성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이든, 살아가는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든 당사자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시스젠더 이성애자에게는 아무도 그 ‘정체화의 계기’나 이유를 묻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의 정체성이 무엇이든 특별한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 (재)정체화라는 고민과 선택은 오롯이 당사자에게 있기에, 타인이 강제로 정체성을 바꾸려는 ‘전환치료’는 불가능한 시도일 뿐더러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²⁰⁾

16) 성소수자부모모임(2021), 앞의 글

17)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2012), 김지혜 외, 2021에서 재인용

18) 김지혜 외(2021), 앞의 글

19)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명동, 앞의 글

커밍아웃(coming-out):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밝혀도 될지 아니면 계속 숨기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커밍아웃은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개된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게이/레즈비언/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다” 하고 말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행동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겪기도 하기에 커밍아웃한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커밍아웃하는 청소년은 성소수자 혐오적인 욕설, 따돌림,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 한편으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마음껏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지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커밍아웃한 청소년이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²¹⁾

아우팅(outing): 타인이 성소수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커밍아웃(coming out)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벽장에서 나온다’(coming out of the closet)에서 유래된 말이다. 커밍아웃과 달리 아우팅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²²⁾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reparative therapy): 가족이나 종교지도자를 비롯해 교사, 의사, 주변인 등 타인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동의 없이 혹은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종류의 상담, 교육, 투약, 입원 등의 정신적, 신체적 강요와 폭력을 말한다. 전환치료는 그 어떤 종교적, 의학적 관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다.²³⁾ 따라서 실제로는 치료나 Therapy가 아니기 때문에 따옴표를 사용하여 ‘전환치료’라고 표현하였다.

20)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명동, 앞의 글

21)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명동(2018),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22) 한국성소수자연구회(2019), 김지혜 외, 2021에서 재인용

23) 전화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2016),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III

본론

1.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
2. 성별분리 시설
3. 학교폭력 및 학교 안전
4.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1.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

가. ‘포용적인 교육’ 개념의 근거와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포용적 교육

포용적인 교육(Inclusive Education) 개념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 교육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 국제적인 맥락에서 제기’되어 왔다(김지혜, 2016, p.158).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의 교육 받을 권리를 천명한 이래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의 「교육 차별 금지 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²⁴⁾ 등 다양한 국제인권규범으로부터 포용적 교육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교육 2030(Education 2030)」 등의 국제적 교육개혁운동에서 꾸준히 중요한 의제로 포함되고 있다.

김지혜(2016)는 “포용적 교육”이라는 용어는 ‘국가에 따라 장애인의 ‘통합교육’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교육개혁”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면서(김지혜, 2016, p.158), 그 근거로 1994년 특수교육에 관한 살라만카 세계회의에서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 전환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살라만카 세계회의에서는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교육 속에서 아동의 특별한 요구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전환하였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교육 차별 금지 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의 한국 비준을 검토하고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 「교육 차별 금지 협약」이 처음 발표된 이후로 협약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으며, ‘교육’의 범위는 학교교육을 넘어 취학전 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으로, ‘차별’의 범위 역시 그 의미를 점차 확장하여, 이제는 ‘포용(inclusion)’으로까지 연장되고 있다(김용 외, 2022, p.1)²⁵⁾.

24) 「교육 차별 금지 협약」은 ‘교육권’에 관한 최초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유네스코는 이 협약이 ‘교육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이야말로 인간과 사회의 본질, 즉 마음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가장 치명적이며, 그 희생자들이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라는 인식의 산물(UNESCO/ED/DISC/SR.1.p.3. UNESCO: 2005: 1).’이라고 설명하였다(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022).

25) 한국은 2023년 현재 유네스코 「교육 차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0년부터 유네스코

성소수자 포용적인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 제16원칙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며²⁶⁾, 그 이전에도 이미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4(2003)’에서 아동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도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도 가입해 있는 다수의 국제인권규범(조약기구)과 세계 여러나라의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과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수집, 공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포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갖추어야 하는 원칙과 실천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인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다.

김지혜(2016)는 성소수자 포용적인 교육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소수자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포용적 교육’의 원칙을 채택할 때, 단순히 성소수자가 학교에 있다는 것으로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 성소수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존중받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에서 배제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 원칙은 교육정책과 관행에서 배제를 발생시키는 요소를 찾는 분석틀이 된다. 즉,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이슈를 포용적 교육의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예컨대 교육의 기회가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거나 부적절한지,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차별과 편견이 교육의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에 가입하여 위 협약과 같은 취지의 권고(1960 Recommenda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의 이행 현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5년에는 인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에서 ‘인천 선언’이 채택되었고, 해당 선언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 운동의 후속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교육의제를 채택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내에서의, 또 교육을 통한, 포용(inclusion)과 형평성(equity)은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의제의 주춧돌이며, 따라서 우리는 교육 접근성, 참여 및 학습 성취에서 모든 형태의 배제와 소외, 불평등과 격차를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교육목표도 모두에게 미치지 못하면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정책에 있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과,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노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UNESCO, 2015b, 7). (김지혜, 2016에서 재인용)

26) 이 원칙은 차별금지, 법 앞의 평등, 노동권, 표현의 자유 등 그 동안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발달되어 온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29가지로 명시한 것으로, 2006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25개국의 국제인권법 관련 전문가들이 채택 및 발표하였다.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21))

커리큘럼이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성소수자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인력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살피게 된다.”

나.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

이하에서는 성소수자 포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욱야카르타 원칙과 미국 등 해외의 교육부 등에서 구성,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욱야카르타 제16원칙: 교육권

제16원칙. 교육을 받을 권리²⁷⁾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교육시스템 내에서 학생, 직원, 교사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와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교육이 각 학생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그들 잠재력의 최대치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며, 모든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 C. 교육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존중하면서, 이해, 평화, 관용, 평등의 정신으로, 인권에 대한 존중과 각 아동의 양육자(parents)와 가족 구성원, 문화적 정체성, 언어, 가치관에 대한 존중을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 D. 교육방법, 교과과정, 그리고 교육자원은 특히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 관련 학생과 양육자, 가족구성원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포함 -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E. 학교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등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폭력으로부터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학생, 직원, 교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 F. 그러한 배제나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이 보호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참여적인 방식으로 그 학생들의 최선의 이익이 발견되고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 G. 학생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혹은 그것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일이 없이, 교육 기관 내의 규율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와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H.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누구나 평생교육의 기회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시스템 내에서 이미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겪은 성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 I*. 아동의 발달 능력을 고려하면서, 교과과정에 성적, 생물학적, 신체적, 심리적 다양성 및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징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J*. 교사 연수와 지속적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성적, 생물학적, 신체적, 심리적 다양성 및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징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미국 메사추세츠주 초중등교육위원회(2015):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한 원칙²⁸⁾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한 원칙〉

1.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괴롭힘, 폭력,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여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보호 범주로 포함하는 개정된 학생 차별 금지법(G.L. c. 76, §5)에 따라, 그리고 모든 메사추세츠 학교와 학군에서 이러한 보호가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군 차별 금지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 환경(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을 조성하는 메사추세츠 공립 학교를 위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책과 관행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2. 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교육에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된 폭력 및 자살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학생 차별 금지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위원회와 교육감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종,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 방지와 학교 환경에서 이러한 차별 및 괴롭힘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에 관한 현직 교육을 적어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603 CMR 26.07(3) 참조.
 - 메사추세츠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괴롭힘 방지 전문성 개발의 내용에는 괴롭힘 사건을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발달에 적합한 전략과 학교 환경에서 특히 괴롭힘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특정 범주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G.L. c. 71, §37O(d)(4).
 - 교직원 교육에는 성소수자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자해하게 되는 특정 문제와 성소수자 학생의 건강한 결과와 회복력을 촉진하는 요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직원에는 교육자, 관리자, 학교 간호사, 상담사, 사서, 식당 직원, 관리인, 행정 보조원, 버스 운전자, 운동 코치, 활동 상담사, 모든 지원 직원 및 보조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7) 김지혜(2021) 외,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8) 미국 메사추세츠주 초중등교육부(2015. 3. 24.), *Principles for Ensuring Safe and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s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Questioning (LGBTQ) Students*, <https://www.doe.mass.edu/sfs/lgbtq/Principles-SafeEnvironment.html>

3. 학교가 성소수자 및 이성애자 학생을 위한 학교 기반 그룹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자-이성애자 연합 또는 성별 및 섹슈얼리티 연합(GSA)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과 회복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 고립되어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의미 있는 리더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등학교는 성소수자와 이성애자 등 모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안전한 환경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GSA는 모든 학생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교직원 지도교수와 학교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GSA 학생 리더와 성인 고문은 초중등교육위원회 학생자문위원회를 모델로 하고 주 전체 리더십 위원회와 5개 지역 위원회로 구성된 매사추세츠 GSA 리더십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4.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의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성소수자 학생 건강의 핵심 결정 요인은 부모의 수용과 가족 지원입니다. 학생 지원팀, 지도 직원, 지역사회 파트너는 가족과 학생이 상담, 정보, 지원 서비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관리자와 지도 직원은 교육부 지침에서 권장하는 실천방법(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을 이유로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보호자 통지에 관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부모 통지 절차를 설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5. 학군(School districts)은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능숙한 교직원을 지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모든 학군은 교육부 지침에서 권장하는 실천방법(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을 이유로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보호자 통지에 관한)데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능숙한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학교 커뮤니티를 교육하는 데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 외에도 학군 및 교육부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6. 학교는 커리큘럼을 통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의 인권과 시민권을 존중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학생 차별 금지법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 시스템은 커리큘럼을 통해 인종,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출신 국가 또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인권과 시민권을 존중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603 CMR 26.05(1) 참조.
- 연구에 따르면 커리큘럼에 성소수자 주제를 포함하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리큘럼은 보건, 사회과학, 언어, 가정생활 커리큘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목 영역 전반에 걸쳐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문제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7. 학교는 학교 도서관과 학생 및 교직원 자료실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학교 도서관에는 성소수자에 관련된 도서와 미디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연령에 적합한 의료 및 사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컴퓨터 필터링 프로토콜을 검토하여 성소수자 학생과 기타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이 성소수자 청소년, 지역 및 국가 자원, 성소수자 건강 정보와 관련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학교는 다양한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모든 학생들에게 진정한 역할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학생 차별 금지법의 보호 범주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직원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는 지원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해 물어볼 수 없지만, 학교 시스템에서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교직원이 안전하고 지원받으며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학교는 학업 및 비학업 정책과 절차,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성소수자 학생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학습 경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소수자 청소년은 괴롭힘, 무단결석, 폭력, 약물 사용, 비동반 노숙, 훈육 치료, 청소년 사법 시스템 연루 등의 불균형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학교는 이용 가능한 출석, 정학, 퇴학, 괴롭힘, 학교 분위기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소수자 학생에게 존재할 수 있는 패턴과 장벽을 파악 및 해결하고, 이들의 출석과 학교 참여를 개선하는 관행을 장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 2014년 매사추세츠주 괴롭힘 방지법이 개정되어 괴롭힘 사건의 성격을 포함한 괴롭힘 사건 데이터를 매년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시스템은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및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의뢰를 검토하여 성소수자 청소년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 학교는 또한 교육부의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매사추세츠 공립학교 지침에서 권장하는 것과 같은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서 권장하는 정책과 관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캐나다 앨버타주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²⁹⁾

〈실천 지침〉

- 1.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라.**
- 2.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을 정체화할 수 있도록 존중하라.**
예) 자신이 선택한 이름과 호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존중하고, 학생의 신원 확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라.
- 3. 학생의 사생활과 기밀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학교 기록을 유지하라.**
예) 학생의 법적 출생 이름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학교 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고, 학생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부적절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9) 송지은, 정명화(2022),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등.

4. 교복 규정이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라.
예) 성별에 따라 분리된 교복 규정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라.
5. 성별분리된 활동을 최소화하라.
예) 학습이나 스포츠 활동, 장기 대회에서 “남자”와 “여자” 팀으로 나누어 경쟁하지 않도록 해라.
6.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교육 커리큘럼 활동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예)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나누지 않는 것이 좋다.
7. 화장실과 탈의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예)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예) 학교는 접근이 쉬운 성중립 화장실, 1인 화장실을 제공하라.
예) 가능하다면, 학교 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중립 화장실을 하나 이상 배치하는 것이 좋다.
예) 탈의실 또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사적 공간을 만들어라.
예) 트랜스젠더 및 젠더퀴어 학생과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대안적인 시설을 제공하라.
8. 성소수자 학생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직원의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9. 괴롭힘이나 폭력을 방지하고 또 건강한 관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통합적인 학교 전체 참여형 접근법을 사용하라.
예) 학생 행동강령은 학교 직원, 학생, 가족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
예) 차별이나 폭력에 대한 항의는 모두 진지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10.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기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학생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
11. 학생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학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환영 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예) ‘어머님’, ‘아버님’보다 ‘보호자’, ‘가족 구성원’ 등 성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12. 학교 직원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4)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

가)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누구나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성을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거나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을 정체화할 수 있도록 존중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나)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성을 이유로,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거나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 괴롭힘, 따돌림, 혐오폭력 등에 단호히 반대하여야 하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면서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학생의 개인정보로서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성별정보의 수집이나 이분법적인 성별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상담교사 등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학생의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에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불필요하게 성별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도 이분법적으로만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취학명부 등 공적장부에 기재된 법적성별과 다른 성별로 정체화한 학생이 성별에 관한 자신의 학교 기록을 열람,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영하되, 변경 전 기록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아우팅을 예방하여야 한다.

라) 학교 시설(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과 교복·반 배정·반 번호 등 학교 운영, 체육 등 교과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 시스템, 교과과정 등이 성별이분법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성중립적이어야 한다. 학교 내에 성별로 구분된 시설이 있을 경우, 학생이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에 따라 자유롭게 안전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한 차별, 폭력, 낙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적인 지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의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마)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정보, 성소수자와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육자원(도서관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인간의 다양한 성적 발달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³⁰⁾.

바) 성소수자 학생을 이해하고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자료가 포함된 교사연수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학생을 직접 만나는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를 포함한 교육 관계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한다. 이들이 아동·청소년 성소수자의 비가시성과 적대적 환경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연구에 기초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가지며, 성소수자를 인간의 다양성 안에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³¹⁾ 체계적인 교사연수 및 다양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0) 김지혜(2016), p.166

31) 김지혜(2016), p.167

사)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소수자 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경험을 파악하여 그 존재를 인지하고, 모든 학교 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³²⁾.

다.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 현행 학교 관련 법제도 현황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령 및 제도를 다섯가지 주제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보건법 - 특수교육법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32) 김지혜(2016), p.166

<p>비밀유지 / 개인정보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보건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 각 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학교건강검사규칙 - 학교신체검사규칙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
<p>교육 / 인식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p>국가의 책무 / 인권보장 매커니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자치법) -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 각 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위 주제 중 이번 연구에서는 ‘학교 시설’, ‘학교폭력/안전’, ‘비밀유지/개인정보보호’에 집중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위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차별금지/평등’ 원칙을 담기 위해 학교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방향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방향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4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포용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 다만 동 조항은 1998. 3. 1. 「교육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포함되어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는데, 이후로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높아지는 인권의식을 반영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점차 확대하고 폭넓게 규정하였다³³⁾. 따라서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포용적 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 ② (생략) 〈신 설〉</p>	<p>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33)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지향’이, 2012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 환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기본법이므로, 해당 법에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삽입될 필요가 있다. 2023년 현재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는 공격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에 의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³⁴⁾. 다만 박주민 발의안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별 정체성, 성별표현 등을 포함한 수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7조(학생의 인권보장) ① 학생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의2(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 압수하는 행위.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性的)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10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 행	개 정 안
	5.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을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법령이나 고시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7. 성적 괴롭힘을 가하거나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8.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성별분리 시설

가. 성별로 구분된 학교시설과 성소수자 학생의 배제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은 시설은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하게 되는 일상적 공간이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에겐 이용 자체를 망설이게 하고 때로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차별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성별로 구분된 학교 시설에서의 경험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 ‘학교 시설’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첫 출발로서 트랜스젠더·젠더퀴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실제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으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의 학교 시설이용 경험과 어려움 조사〉는 2023년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였다. 자료 조사는 접근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을 택하였고, 구글독스 프로그램을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연구목적이 담긴 웹 홍보물을 제작해 명동 SNS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등을 통해 설문을 홍보하였다. 설문 문항에서 집담회 참여 여부가 가능한지 추가 확인하였고, 신청자 중에 성별정체성과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단성/혼성학교 재학 여부) 등을 고려해 집담

회 참여 대상자를 최종 9명 선별하였다. 집담회는 2023년 10월 7일 약 2시간 동안 zoom을 활용한 화상 미팅으로 진행되었다. 집담회를 통해서는 설문 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한 차별의 경험과 성 중립 화장실 설치에 대한 기대와 걱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였다.

비교적 짧은 설문 기간이었고, 트랜스젠더·젠더퀴어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86명이라는 유효 응답자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 내용에는 출생연도와 개인의 성별정체성, 학교에서 어떤 성별로 인식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성별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재학 여부와 학교 형태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였다. 심층적으로는 교실(반 배정)에 관한 질문과 학교 시설을 이용하며 겪은 어려움을 구분하였다. 학교 시설은 더 세부적으로 화장실, 탈의실(또는 옷을 갈아입는 공간), 기숙사, 기타 성별 분리된 시설에 관한 질문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응답자의 특성

〈표 1〉 응답자의 연령대

구분		전체	
		빈도수(명)	백분율(%)
연령대	12세~13세	3	3.5
	14세~16세	18	20.9
	17세~19세	41	47.7
	20세~24세	24	27.9
계		86	100.0

설문 응답자는 총 89명이었지만, 출생연도가 25세 이상으로 응답한 3명의 경우는 유효 응답자 수에서 제외하였다. 응답자 중에 현재 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가 52명(63.0%)으로 가장 많았고, 탈학교(12명) 하거나 졸업한 이들(22명)도 34명이었기에,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겐 학교 다녔을 때의 경험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응답자의 성 정체성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법적 성별	남성	32	37.2
	여성	54	62.8
성별정체성	트랜스젠더 여성(MTF)	25	29.1
	트랜스젠더 남성(FTM)	27	31.4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젠더플루이드, 바이젠더, 에이젠더 등	34	39.5
계		86	

응답자의 성 정체성 정보를 살펴보면 총 86명의 유효 응답자 중에 남성이 37.2%, 여성이 62.8%로 법적 성별이 여성인 청소년이 더 많이 참여했다. 성별정체성으로 구분해 보면 트랜스젠더 여성이 29.1%, 트랜스젠더 남성이 31.4%, 젠더퀴어 또는 논바이너리 등이 39.5%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트랜스젠더 이외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기타 항목을 두어 자신이 정의한 성별정체성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성별 범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지 않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표 3〉 성 정체성을 알고 있거나 어떤 성별로 인식되는지 여부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학교에서 어떤 성별로 인식되고 있는지	나의 법적 성별대로 인식되고 있음.	72	83.7
	나의 성별정체성대로 인식되고 있음.	7	8.1
	기타	7	8.1
학교에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음.	50	58.1
	없음.	36	41.9
계		86	

응답자 모두 자신의 법적 성별과는 다르게 성별정체성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어떤 성별로 인식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성별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응답자 대다수는 법적 성별대로 인식되고 있었고, 단 8.1%만

이 자신이 원하는 성별정체성대로 학교에서 인식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교 시설 이용 시 겪게 되는 어려움과도 연결된다. 기타의견으로는 ‘반반’이라고 작성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는 의미이며, 이 외에도 “트젠(트랜스젠더) 같은 애”로 취급받거나, 누군가 자신의 성별을 헛갈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가까운 지인들이 나서서 법적 성별을 알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고 응답(58.1%)한 이가 없다고 응답(41.9%)한 이보다 더 많았다. 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쿼어 친구들이나 같은 반 또는 다른 반 친한 친구들이 알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이 알고 있기도 하였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경우 학교 시설을 이용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불편함과 그 감정에 대해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행일 수 있으나 직접적인 문제해결로까지 이어지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표 4〉 조사 응답자가 다니는(다녔던) 학교의 형태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학교의 형태(1)	국/공립학교	48	55.8
	사립학교	29	33.7
	대안학교	3	3.5
	특성화고	1	1.2
	모르겠음	5	5.8
학교의 형태(2)	남녀공학 - 합반	56	65.1
	남녀공학 - 분반	4	4.7
	남학교	14	16.3
	여학교	12	13.9
계		86	100.0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다녀야 할 학교가 미리 결정되는 현실에서 학교의 형태에 따라 학교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어떤 학교 형태를 다니고 있는지(다녔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대다수인 89.5%가 국/공립학교이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녔다고 하였다. 그 외 대안학교나 특성화고를 다니는 경우도 소수 있었으며, 5.8%는 학교의 형태를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성학교(30.2%)보다 남녀공학을 다니는 경우(69.8%) 더 많았다. 이는 남녀공학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닿아 있다. 다만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이는 현재 남녀공학 합반이지만 전공 기준으로 나뉘고 있어 개인의 선택이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학급이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배정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자 모두 법적 성별대로 배치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교 선택 및 학급 배정에 있어 개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자신이 원하는 성별정체성으로 반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학교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 성별위화감을 느낀다고도 응답하였다.

2) 화장실 이용 경험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는 일상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이분적인 대표적인 공간이기에 트랜스젠더에겐 화장실 출입 자체가 눈치 보일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 화장실 이용 시 어려움은 없었는지,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느끼는 감정과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성 중립 화장실이 설치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5-1〉 학교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 - 정체성별

구분	전체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등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네	27 (31.4)	3 (12.0)	8 (29.6)	15 (44.1)
아니오	59 (68.6)	22 (88.0)	19 (70.3)	19 (55.8)
계	86 (100.0)	25 (100.0)	27 (100.0)	34 (100.0)

응답자의 성별정체성을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그리고 하나의 성별로 인식하지 않거나 성별인식이 유동적이거나 성별 자체를 감각하지 않는 이들로 구분해보면, 세 그룹

의 총 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청소년의 경우 학교 화장실이 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반면,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등의 청소년들은 학교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44.1%).

트랜스여성/남성의 경우 철저히 두 개의 성별이 구분되는 사회 안에서 지정성별 관련 디스포리아를 크게 느끼고 그 '반대'에 있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데 비해,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등의 청소년들은 '젠더플루이드(*성별 인식이 유동적인 정체성)로서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거나, '성별불쾌감이 큰 편이 아니어서 사람만 없다면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었다'는 등 성별이분적으로 나뉜 화장실의 어느 쪽에 더 크게 불편함/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 결과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짐작해 본다. 하지만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등 청소년들 역시 대체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때 겪은 일'에 대한 주관식 설문에서는 화장실 이용시의 디스포리아 경험을 이야기하였고,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데 여자 화장실에만 들어갈 수 있어서 나의 젠더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단성학교라 화장실이 단일 성별로 설치되어 있어) 성별이분적인 남, 녀 화장실을 보는 것보단 나았다', '이분법대로 갈라진 화장실을 보며 답답했다'는 등 오히려 시설이 성별로 구분된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2〉 학교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 - 학교유형별

구분	전체	단성학교	남녀공학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네	27 (31.4)	8 (30.7)	19 (31.6)
아니오	59 (68.6)	18 (69.2)	41 (68.4)
계	86 (100.0)	26 (100.0)	60 (100.0)

전체 응답자 86명 중의 59명에 해당하는 68.6%가 학교 화장실을 편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단성학교의 경우 69.2%가, 남녀공학의 경우 68.4%가 학교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단성학교는 특정 성별 화장실 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선택의 고민을 하지 않아서 이용하기 편했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반대로 교사용 화장실이나 이용 빈도수가 낮은 화장실을 찾아 이용하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어서 아예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거나, 아무도 없을 때 이용하거나, 불안, 무서움 등의 감정을 추스르며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했다고 답변한 이들도 있다.

구분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경험했던 일들
화장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 화장실을 최대한 가지 않고 참았어요. •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 가벼운 일은 참는데 큰일 있으면 보통 조퇴를 하는 편인데 이게 너무 불편해요.
아무도 없을 때 이용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들이 보는 게 부끄러워 수업시간에 가고 칸에 들어간다. • 사람이 없을 때까지 버텼다가 이용합니다. • 아무도 없을 때 일부러 간 경우가 많았어요. • 최대한 다른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수업시간에 간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이용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애들이 잘 안 쓰는 화장실을 이용해서 편했다! 그리고 3년 동안 다니니 익숙해졌다. • 학생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무서운 감정이 들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도 없을 때 갔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화장실에 사람이 많으면 무서운 생각도 든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좋지 않아 소변기만 잠시 사용하고 나온다. 기쁨은 자괴감이나 우울감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이용한다. • 누군가한테 감시당하거나 찍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 갈 때마다 무서웠어요. 항상 대변기 칸에 갔지만 두려웠어요. •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때 나와 맞지 않는 성별에 대해 다시 인지해야 하는 점이 불편했다. • 위화감도 들었고 화장실을 같이 가자던 친구들 탓에 곤란했던 적이 많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차피 여고라서 샷컷이든 기골이 장대하든 당연히 모두가 여자로 패싱되기 때문에 그냥 갔다. • 화장실(교직원 화장실 제외) 하나의 성별만 있다 보니 들어가기 편했음. • 남학교라서 학생용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편했습니다. • 입구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장실'이라고만 적혀있었니까요. 하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편하지 않았어요.

남녀공학의 경우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남녀 화장실이 모두 있다 보니 단성학교 보다 성별 위화감을 더 느끼게 되면서 '눈치'를 보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감이나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단성학교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거나,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을 대안으로 이용하거나, 심리적으로 힘든 순간을 감당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했다.

구분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경험했던 일들
화장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을 덜 마시고 최대한 소변을 참아요. 그런데 거의 십몇 년을 그렇게 참고 물도 안 마시다 보니 신장에 무리가 갔는지 건강검진에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 학교 화장실을 쓰는 것을 불편해했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만 화장실에 갔습니다. • 참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 이용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에 들어가기 싫고 그 모습이 보이기도 싫어서 항상 수업시간에 감. • 혼자 화장실 쓰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빠르게 들어가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려고 있고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이용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많을 때는 가지 않음. •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에 사람이 있으면 못 가요.
눈치 보고 불편함. 심리적으로 힘들. 스트레스 답답함 불쾌감, 수치스러움 존중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정체성과 다른 이성들과 사용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지정 성별과의 괴리감을 느껴 불편했습니다. • 무조건 지정 성별로만 이용해야 하는 점에서 불편했습니다. • 나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 그저 이분법대로 갈라진 화장실을 보며 답답했을 따름이다. •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여성임이 증명되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디스포리아) •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면 묘하게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 뭔가 따돌림당한 느낌도 들고 디스포리아도 세게 와서 화장실 사용이 어렵다. • 저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데 여자 화장실 만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저의 젠더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일이 크게 있진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남자'라고 적힌 곳에 들어가는 게 싫었다. • 법적 성별 인식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공간은 그 자체로 불만이고 슬픔인데 그런 공간이 두 배(학교+화장실)가 되어버려서... • 여자 화장실에는 각 칸마다 칸막이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구조이기에 나름대로 편안했던 것 같아요. • 해당 교사가 제가 여성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 남자 아니냐고 수군대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현재 학교에서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이후 학교에 만약 성 중립 화장실이 별도로 생긴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성 중립 화장실 이용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성 중립 화장실이 있다면 이용할 마음이 있는지

구분	빈도수 (명)	백분율 (%)
그렇다	67	77.9
아니다	13	15.1
기타 응답	6	7.0
계	86	100.0

응답자의 77.9%가 학교에 성 중립 화장실이 생긴다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우팅의 우려나 또래 친구들의 놀림,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한 응답자도 있었지만, 반면 성 중립 화장실이 설치된다면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 작성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다’와 ‘아니다’라는 응답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표적이 되거나 놀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15.1%가 성 중립 화장실을 이용할 마음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 역시 기타 응답에 작성된 내용과 비슷했다. ‘아우팅 위험’과 ‘무조건 다른 학생들이 욕하고 놀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했고, 화장실을 빌미로 학교폭력이 증가하거나 학교에서 혐오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또한 있었다.

참여자에게 만약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다면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수집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대되는 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편안함’이다. 디스포리아를 덜 느끼고, 스트레스나 모멸감이 줄어들 거란 기대 또한 존재했다. 걱정되는 점에서는 일관적으로 아우팅과 괴롭힘, 폭력 피해의 대상이 될 것이란 두려움이 존재했다. 또한,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거란 생각, 따가운 시선을 받을 거란 생각, 학부모 민원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구분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다면
기대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너무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거 같아요. • 디스포리아가 덜해질 듯. • 화장실 이용에 있어 부담감과 디스포리아를 덜 느낄 수 있어 신체 및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 편안한 화장실. 외부에서도 불일을 해결할 수 있다. • 성별정체성대로 대우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에 그 자체만으로 기쁩니다. • 디포(디스포리아) 경감, 억지로 여자인 척하지 않음으로서 줄어드는 스트레스와 모멸감. • 내 성별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가니 편할 것 같다. • 화장실에 누가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걱정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선,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두렵다. • 법적 성별과 다른 성별용의 화장실을 쓰면 자동으로 아우팅이 됨. •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다른 학교 구성원들에게 트랜스젠더라고 인식되어 혐오 발언 등 다른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 아우팅, 혐오 발언. • 저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저지를 성적희롱, 폭력 등이 우려됩니다. • 한편으로 혐오의 대상이 될 것 같다. • 학부모들의 민원. • 아우팅과 이로 인한 괴롭힘. • 주위 사람한테 불편함을 줄 거 같고, 놀림거리가 될 것 같다. • 다른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인 저를 더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하네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모든 건물, 모든 층에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 화장실 하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두 개 이상이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누군가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왜 두 개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1인용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실보다 많은 것이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3) 탈의실 이용 경험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에 탈의실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52.3%의 응답자가 탈의실 이용이 편안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17.4%가 탈의실 이용이 편안했다고 하였다.

〈표 7〉 탈의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구분	빈도수 (명)	백분율 (%)
그렇다	15	17.4
아니다	45	52.3
응답 없음	26	30.3
계	86	100.0

학교 탈의실을 이용할 때 겪은 일이 무엇인지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탈의실이 화장실 칸막이처럼 1인 탈의실로 구획된 경우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 불편함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수의 응답자들은 신체가 노출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학생들의 시선을 피해 나중에 탈의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대안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분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경험했던 일들
신체를 드러내야 해서 불편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에는 입고 있는 옷 위에 체육복을 덧입고 벗을 수 있어서 나았지만, 여름에는 교복 셔츠를 벗어야 해서 상체 굴곡이 잘 드러나게 되어 주위 시선이 신경 쓰이고, 보고 싶지 않은 타인의 신체도 눈에 들어와 불편하였습니다. 제 몸을 보인다는 것이 불편했어요.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게 힘들어서 화장실을 갔지만, 항상 붐벼서 결국 교실에서 갈아 입었어요. 신체가 노출되는 일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고, 바인더를 착용한 경우에는 교실이 아닌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기도 했다.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체에 가까운 상태가 돼야 하다 보니 신체에 대한 불만이나 디스포리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본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학생들이 없을 때 탈의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아이들이 먼저 나간 이후에 빠르게 갈아입거나 속옷 등을 안에 걸친 상태로... 갈아입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다 갈아입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아입으니까 체육 수업에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구분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경험했던 일들
탈의실이 구획되어 있어 편안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부스형 탈의 공간이 설치되었습니다. 비록 고3들은 대부분 편한 복장으로 학교에 가기 때문에 실효성은 느끼지 못했지만, 매우 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 우리 학교는 반마다 탈의실이 있었는데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 화장실처럼 칸막이 형태의 1인 탈의실이라 불편함이 없었다. • 탈의실이 한 칸씩 나뉘어있어서,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성 중립적이라 편안했어요. • 탈의실은 성별 구분이 없어서 괜찮았어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로 문을 열어서 놀리거나 지정 성별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등의 언어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 남고였는데 학생들이 탈의실을 이용하지 않고 반에서 탈의했기에 탈의실에는 늘 저 혼자였기에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친구들이 여자끼리는 괜찮다면서 제 앞에서 옷을 벗거나 제 몸과 가슴을 보고 와 똥똥하다, 가슴 꽤 큰데?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탈의실 이용 경험과 ‘학교 탈의실 등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되려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보면 응답자들은 매우 일관되게 한 사람씩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탈의실의 필요에 대해 강조하였다. 화장실과 달리 탈의실 경우 한 사람씩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거나(커튼 등으로 공간 분리). 성별 구분없는 1인 탈의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4) 기숙사 이용 경험

기숙사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성별정체성대로 기숙사가 배정되었는지, 기숙사 이용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기숙사를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있는지, 기숙사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질문을 하였다. 총 86명의 응답자 중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명, 24.4%로 조사되었다. 이 중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배정된 경우는 단 한 명이었다.

〈표 8〉 기숙사가 나의 성별정체성대로 배정이 되었는지 여부

구분	빈도수 (명)	백분율 (%)
그렇다	1	4.8
아니다	20	95.2
계	21	100.0

기숙사는 학교생활과 또 다르게 공동 숙소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공간이 주는 압박과 공동샤워, 공용탈의 등 불편함을 주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샤워를 하거나, 최대한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기숙사를 나오기도 하고, 학교에 요청해 1인실을 사용한 예도 있었지만,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숙사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기숙사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되려면 기숙사 배정을 법적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1인실을 기본으로 하되, 방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갖춰져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존중되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구분	세부내용
기숙사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들을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호칭(언니 오빠 누나 형) 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 눈치 보여서 바인더를 입기가 힘들었습니다. • 시스젠더 동성끼리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여 맨몸을 보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분위기, 보통 동성끼리 나눌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성적인 이야기 등에 저도 당연히 참여하고 공감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난감한 경험을 종종 하였습니다. • 사감 선생님 중 한 명이 귀여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람이어서 외모를 보고 절 동성애자로 낙인찍어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내며 차별했습니다. • 일단 공용샤워실과 공용탈의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샤워하다 보면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기숙사 방에는 4명씩 사용을 했었는데 옷을 방 안에서 갈아입으면 함께 지내는 룸메이트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구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성별끼리니까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로 사생활 소멸. 바인더와 같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속옷 등을 들길까 봐 불안함. 아우팅을 당했을 경우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음. 24시간 내내 혐오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 적절하지 않은 성별 정체성으로 분류되는 것에서 오는 불쾌감, 괴리감, 불편함. • 기숙사 앞에 성별이 붙는 것도, 트랜스 남성으로서 여성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 성희롱을 많이 당하고 씻기가 매우 부끄러웠다.
기숙사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체가 트랜스 젠더퀴어 프렌들리한 공간이 됨을 전제하고, 법적 성별로 건물이나 층을 나누지 않고, 1인실을 기본으로 한다. • 일인용 기숙사에 성으로 분리가 되지 않은 기숙사. • 기숙사 공간은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더라도 각 방에 따로 1인씩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방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갖춰져 있어, 잠글 수 있는 구조로 변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샤워가 가능할 것 같고 가능하면 1인실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하고, 소통과 건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고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5) 그 외 성별 분리된 학교 시설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로 대표되는 학교 시설 이외 성별로 분리된 또 다른 시설이 있는지, 성별 분리적 학교 문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재학 중인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물함의 위치나 급식실이 남녀로 나뉜 곳도 있었고 모의고사 때 성별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응답한 이도 있었다. 그 외 성별에 따라 학급 번호를 부여한다거나, 체육 시간이나 조회 시에 남녀를 구분해 줄을 세우기도 했고, 교복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으며, 졸업사진을 찍을 때 여자는 꽃받침, 남자는 최고 포즈로 찍게 하는 등 법적 성별을 강요하는 학교 문화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한 이가 다수 있었다.

6) '모두의 화장실'에 대한 집담회 내용 요약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의 학교 시설이용 경험과 어려움 조사〉 설문에 더해 학교 화장

실의 변화를 기대하는 청소년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 9명과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집담회 참여자들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9〉 집담회 참여자 기본정보

	출생년도	성별정체성	법적성별	재학여부	학교형태1	학교형태2
A	2007	트랜스여성	남성	탈학교	국공립	공학/합반
B	2008	트랜스남성	여성	재학중	국공립	공학/합반
C	2009	트랜스남성	여성	재학중	국공립	공학/합반
D	2008	트랜스남성	여성	재학중	국공립	공학/합반
E	2009	트랜스남성	여성	재학중	국공립	공학/합반
F	2005	트랜스남성	여성	졸업	국공립	공학/합반
G	2004	트랜스남성	여성	졸업	국공립	공학/합반
H	2005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남성	재학중	사립	공학/분반
I	2008	트랜스여성	남성	재학중	국공립	남학교

가) 학교 화장실은 '버티기'의 연속

집담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학교에서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유일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H가 재학중이던 국제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한 학교에서 수료할 수 있는 구조로, H는 초·중등학교는 남녀 분반을, 고등학교는 공학을 경험하였다. H는 '에이 모르겠다, 어차피 지정성별처럼 보이는데 알 바야하는 심정으로 항상 가던 성의 화장실을 다녔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았'고, 분반일 때에도 공학일 때에도 어차피 늘 같은 건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경험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H는 논바이너리로 정체화 하고 있었는데, 앞서 설문 결과에서 특기한 것처럼 트랜스여성/남성 청소년보다 젠더퀴어·논바이너리·에이젠더·젠더플루이드 등 하나의 특정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 이들은 비교적 지정성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의 불편함을 불편하지만 감수할('사회에 맞춰 살')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참여자 I는 남학교에 다니면서 ‘화장실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어, ‘화장실을 안 가는 편이고, 되게 참거나 진짜 급할 때는 조퇴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으로 만난 I는 머리길이가 가슴 아래까지 내려올 만큼 길었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소위 ‘여성 패싱’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학교에서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엄두도 낼 수 없다면서 ‘머리 기른 남자애, 트젠 “같은”애’로만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I는 당시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진학할 예정인데, 고등학교에 가면 ‘당당히’ 커밍아웃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선 커밍아웃 할 용기를 낸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남학교는 애들이 거칠고, 사람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뭐 다 남잔데 어때”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커밍아웃이나 시설이용의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꺼내지조차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I는 ‘3년동안 그랬듯 졸업까지 남은 개월도 버티는 거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참자, 이런 느낌’으로 남은 중학교 생활을 지나 보낼 예정이었다.

참여자 B, D, E, G 역시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구석진 위치의 화장실을 찾아내 이용’하거나, ‘아예 이용하지 않고 참기’, ‘용변 칸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면 나오는 방법’을 택하며 학교 생활을 버티고 있었다.

참여자 D, F는 남녀공학 학교를 다니면서 지정성별인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자신의 젠더표현이 소위 ‘여성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여학생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고,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오히려 ‘지정 성별을 밝히면서 들어가거나, (‘여성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F는 고등학교를 공학(합반)형태로 다녔는데, ‘사람 없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교실과 다른 층에 뛰어갔다 오느라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 ‘누군가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까봐, 불쾌했다’고 한다.

참여자 B는 ‘누가 특정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나를 볼까봐’ 걱정하였던 F의 경험에 동의하면서, ‘평소 패싱이 잘 되는 편이라, 다른 반 여학생에게 나를 “남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과 여자 화장실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 당황스러웠다’고 하면서 원하는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과 아우팅의 두려움을 줄타기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은 성별 구분된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동시에 그 모습을 본 타인에게 특정 성별의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 성별구분 공간에 모인 특정 성별의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지정성별을 자각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지정성별과 다른 젠더표현(외모)로 인해, 성별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할 때 타인으로부터 오해, 지적을 받거나 당혹감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들은 수업이 끝나 집 등의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너무나도 성별적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저 ‘버틸 뿐’이었다.

나)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화장실이 필요하다

집담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성 중립 화장실 설치가 된다면 이용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대체로 대안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기대를 보였지만, 실제로 성 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었을 때 다른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차별적 시선이나 아우팅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따라왔다. 성 중립보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화장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에는 모든 참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성 중립 화장실 만들어진다면 남자, 여자, 성 중립 화장실 3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애 유무도 포함해서 성 중립 화장실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트랜스 남성이지만 성 중립 화장실 이용할 것 같아요. 남자 화장실 가기에는 생물학적 남성이 아니어서 성 중립 화장실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05년생/트랜스남성/공학-합반 경험)

“성 중립보다는 모두의 화장실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별로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 중 보호자 필요한 이들, 미취학 아동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화장실이 아니라 1인이 용변/세면대 이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 (D/08년생/트랜스남성/공학-합반 경험)

“저도 FTM으로서 강제적 디스포리아 경험이 많으므로 법적 성별에 맞는 화장실 이용이 주는 자기관족적 유포리아,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는 데서 발생하는 유포리아 효과 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회대 축제 때 모두의 화장실이 큰 호응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시스/트랜스 막론하고 선택권 고려했을 때 남/녀 화장실에 모두의 화장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G/04년생/트랜스남성/공학-합반 경험)

“남/여 화장실 구분을 없애는게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성별구분 화장실을 이용하는 애들이 성 중립화장실을 가는 애들에게 ‘너 성소수자야?’라고 반응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나눠질텐데... 그걸 파괴하고자 성 중립 화장실 만드는 것인데 여전히 시스젠더 친구들은 (성 중립 안가고) 지정성별 화장실 갈 것 같아요. 남/여/성 중립 세 개가 아니라 하나로 있으면 좋겠다.” (I/08년생/트랜스여성/남학교 경험)

“좋은 한테, 무서워요. 무조건 다른 학생들이 욕하고 놀리고... 학교가 그러면 좋기야 하겠지만 학생들이 이해를 할 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A/07년생/트랜스여성/공학-합반 경험/탈학교)

“모두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하나의 딱 좋은 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나아가갈 방향도 생각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편안한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성별 구분 때문에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애인 화장실 등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선택지를 주는 방향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H/05년생/논바이너리/공학-합반,분반 모두 경험)

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여/남 어느 쪽을 이용하더라도 ‘차별없이 안전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지정성별로 구분하는 학교 시설이 문제기도 하지만, 학교 안에서 혐오에 대한 교육이 부재해서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거리낌없이 하는 학생들, 트랜스젠더 학생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 학생의 필요를 예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하는 교사들,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의 학교 시설이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의 성별정체성대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학교에 요구해 본적이 있나요? 아니요. 무서워서요. 학교 다닐 때, 도덕시간이었는데, 성소수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다 엄청 웃었어요. 욕하고.” (A/07년생/트랜스여성/공학-합반 경험/탈학교)

“학교 선생님 중 위클래스 상담선생님에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제가 느끼기엔 선생님들도 커밍아웃 한 학생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 학생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학교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말하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너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시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만났을 때 그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05년생/트랜스남성/공학-합반 경험)

“저도 중학교 때 위클래스 교사에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트랜스젠더 학생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명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해요. (커밍아웃을 했는데도) 위클래스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저를 자꾸 ‘딸’, ‘언니’라고 부르시는 등 미스젠더링이 계속되어서 불쾌했어요.” (D/08년생/트랜스남성/공학-합반 경험)

“수련회를 갔는데 여/남으로 조를 구분해서 같은 반 남자애들과 분리가 되었어요. 저희 학교는 호모포빅한 분위기라 성소수자를 멸칭으로 부르는 일이 익숙한 곳인데,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주로 지정성별 남성이거든요. 수련회에서 제가 여성으로 인식, 잘못 구분된 것이 불편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하는 남학생들과 떨어져서) 평소 학교 생활보다 편하게 느껴 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는 학교 안에서 혐오에 대한 교육이 부재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혐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너 게이지’ 라고 학생들끼리 말 하는 것을 교직원이 전혀 제재하지 않아요. 위클래스 상담샘 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전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D/08년생/트랜스남성/공학-합반 경험)

또,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존중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제도 적 장치들이 철저하고 정교하게 잘 마련되어야 한다’며, 학생인권과 관련한 법령에 ‘성 소수자 관련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만약 제 정체성대로 학교 다니기 위해서라면 법제도적 장치들이 철저하고 정교하게 잘 마련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임을 숨기고 친구에게 트랜스젠더에 관한 생각을 설문해본 적이 있는데, 놀랐어요. 성소수자 존재를 존중하지만 왜 그들을 위한 법제도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법제도)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그래서 혐오나 반대에 맞닥뜨렸을 때 법제도 근거를 가져와서 이걸 네가 잘못된 거라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뭔가 앞에 나서서 우리도 실제로 존재한 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너희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사람 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F/05년생/트랜스남성/공학-합반 경험)

7) 소결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의 학교 시설 이용 경험과 어려움 조사〉를 통해 성별 분리된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시설로 대표되는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에 서의 성별 분리 경험은 성별 위화감을 강화하고,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높이는 등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같은 경험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학교에 요구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대다수 설문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이 힘들었지만 요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맨정신에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자신감이 없었고, 눈치가 보였고, 아우팅과 사람들의 편협한 시각이 두려워 말하 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사실 학교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드러내며 직접 문제를 제기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성별 분리를 강화하는 법제도의 개선 없이 ‘침묵’으로 안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 환경의 원칙에서 학교 시설(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과 교복, 반 배정, 반 번호 등 학교 운영, 체육 등 교과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성 중립 화장실과 1인 탈의실 설치, 성별정체성에 맞는 기숙사 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은 물론 반 배정, 성별에 따른 줄 세우기 등 성별 이분법적 학교문화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현행 법령의 문제를 짚고 개선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나. 현행 법령의 한계와 문제점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교육시설법)

「교육시설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모두 ‘교육시설’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육시설기본계획에는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계획,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조). 「교육시설법」은 학교시설에 관한 근거법인데, 현행규정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가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란, 단순히 교육시설의 안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시설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성별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단성학교/남녀분반 배정 문제

중·고등학교 남녀 공학 현황³⁵⁾

중학교(학교 수)

구분	계	남자	여자	공학
총계	3,258	348	325	2,585
국립	9	1	1	7
공립	2,616	179	168	2,269
사립	633	168	156	309

고등학교(학교 수)

구분	계	남자	여자	공학
총계	2,373	403	402	1,548
국립	19	1	-	18
공립	1,409	167	149	1,093
사립	945	235	273	43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0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 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학교시설 이용 경험과 어려움 조사(2023)〉 결과에 의하면, 남녀 공학(합반)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남학교, 여학교 단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남녀공학과 단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인식되는 대신에 법적 성별대로 인식

35) 2022년 교육통계연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81명 중 32명이나 되었다. 즉, 대부분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법적 성별대로 학교 및 반이 배정되고 있다. 학교 배정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는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불일치하는 학교에 배정이 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이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 환경에서는 학생 개인이 자신이 트랜스젠더 학생임을 밝히고 학교 배정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신이 성별정체성과 불일치하는 단성학교에 재학 중인 트랜스젠더에게 남녀공학 등으로 전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단성학교, 남녀분반 학급을 줄이고, 불필요한 성별분리 배정을 없애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화장실 관련법령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화장실 사용 문제다. ‘학교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81명) 중 58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아무도 없을 때 갔지만 항상 불안했다”, “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 물을 마시지 않았다.”, “학생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했다”, 라고 응답하였다. “학교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 시도해 본 방법”을 물었을 때, “학교 관계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남녀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있었다.

학교 내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은 「학교보건법」에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자용, 여자용으로만 구분된 화장실을 트랜스젠더 학생이 사용하기는 어렵다.

단성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용 화장실이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

아서 입구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나왔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위화감과 불편함으로 사람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는 법적 성별대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반대의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오인을 받는 일도 있었다. 법적 성별(지정성별)과 다른 성별 표현이나 외관을 하고 있는 경우에 남자용/여자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 (4)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5)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

나.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4) 탈의실, 기숙사 등 성별분리 시설

학교 내 탈의실 사용과 관련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경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체육시간이 있는 날은 체육복을 입고 등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의실 사용

과 관련한 문제가 감소되었다는 의견과 학교 내 탈의실이 1인용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해외 사례³⁶⁾

1)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Policy 713(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Policy)³⁷⁾

(Universal Spaces (Private))

- 6.4.1 모든 학생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 시설은 모든 학생이 낙인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6.4.2 **모든 학교에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개인용)[universal washroom facility (private)]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6.4.3 모든 학교에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탈의실이 있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권고)

- 7.1 학교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universal washroom facility)'을 하나 이상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 7.2 교육감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과 관련된 이유로 전학을 요청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7.3 가능하다면 학생은 학교 밖으로 이동할 때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견학, 과외 활동, 교과 과정 활동, 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ravelling for competition), 다른 학교에서의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2) 미국: 뉴욕주 민권법³⁸⁾

§ 409-M. 성 중립적인 1인용 화장실 시설
모든 학교의 교육위원회 또는 이사회, 뉴욕시 학교의 경우 교육감, 그리고 주 내 모든 협력 교육 서비스 위원회, 차터 스쿨 및 비공립학교는 **모든 1인용 화장실 시설을 한 번에 한 명만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보조자**

36) 성별분리 시설 관련 해외 사례 리서치 및 번역: 임두리

37) New Brunswick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2023. 8. 23.), *Policy 713(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Policy)*, <https://www2.gnb.ca/content/dam/gnb/Departments/ed/pdf/K12/policies-politiques/e/713-2023-07-01.pdf> (검색일 2023.10.31.)

38) 2021. 3. 23. 개정 시행

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성 중립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 중립 화장실 시설은 각 시설의 출입문 또는 그 근처에 게시하여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본 섹션의 목적상 "1인용 화장실"은 공공건물법 제145조 1항의 (d)항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3. 교육법 제355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개정합니다:

20. 뉴욕주립대학교 이사회는 뉴욕주립대학교의 각 기관이 모든 공공 1인용 화장실 시설을 한 번에 한 명 이하의 거주자만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보조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성 중립적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 중립 화장실 시설은 각 시설의 출입문 또는 그 근처에 게시하여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본 섹션의 목적상 "1인용 화장실"은 공공건물법 제145조 1항의 (d)항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4. 교육법 제6206조를 다음과 같이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개정합니다:

20. 이사회는 뉴욕주립대학교의 각 기관이 모든 공공 1인용 화장실 시설을 한 번에 한 명 이하의 거주자만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보조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성 중립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 중립 화장실 시설은 각 시설의 출입문 또는 그 근처에 게시하여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본 섹션의 목적상 "1인용 화장실"은 공공건물법 제145조 1항의 (d)항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5. 교육법 제6306조를 다음과 같이 제11항을 신설하여 개정합니다:

11. 각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의 이사회는 다음을 채택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 1인용 화장실 시설을 한 번에 한 명만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보조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성 중립적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10가지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 중립 화장실 시설은 각 시설의 출입문 또는 그 근처에 게시하여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본 섹션의 목적상 "1인용 화장실"은 공공건물법 제145조 1항의 (d)항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6. 이 법은 법률이 공포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합니다.

뉴욕주는 2016년 All-gender Restroom법(성 중립 화장실)을 제정하였고, 이후 주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등 성별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왔고, 2019년에는 뉴욕주 교육법에 All-gender Restroom법이 적용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다. 이 법은 기업이나 학교에 성 중립적인 1인용 화장실을 새로 지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1인용 화장실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지정하는 모든 표지판을 제거하고 모든 성별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으로 교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미국: 뉴저지 주법 교육법³⁹⁾ 및 지역 트랜스젠더 학생 가이드라인⁴⁰⁾

18A:36-41 트랜스젠더 학생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배포

1. a. 교육감은 트랜스젠더 학생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학교에 배포해야 합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필요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교가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b. 위원장이 개발한 지침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및 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1) 성 정체성, 성 표현, 트랜스젠더 등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 (2) 트랜지션(성전환)을 진행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 학습 환경 유지;
 - (3)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직원이 학생의 트랜스젠더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가 학생과 협력하여 학생의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 상태에 관한 적절한 기밀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언하는 것을 포함한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 (4) 학생의 법적 이름과 생물학적 성별이 포함된 각 학생에 대한 별도의 공식 기록을 유지하고 이름 또는 성별의 법적 변경에 대한 서류를 수령하면 학생의 공식 기록을 변경하는 등 학교 기록에 대한 절차;
 - (5)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교에서 법적 이름 변경 또는 공식 학교 기록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호칭하도록 보장합니다;
 - (6) 학생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으로 학생증과 같은 학교 서류를 발급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생의 성 정체성에 맞는 복장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
 - (7)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다른 학생과 동일한 체육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성 정체성에 따라 체육 교육에 참여하도록 허용합니다;
 - (8)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생의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이 분리된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9) 화장실 및 라커룸 사용(트랜스젠더 학생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과 상충되는 화장실 또는 라커룸 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제공하는 것 포함);
 - (10) 학교 카운슬러가 트랜스젠더 학생과 관련된 문제 및 우려 사항에 대해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보장.
 - (11)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LGBTQ)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생 동아리 또는 프로그램 구성을 허용하고 지원합니다.

39) 2022 New Jersey Revised Statutes Title 18A - Education Section 18A:36-41, <https://law.justia.com/codes/new-jersey/2022/title-18a/section-18a-36-41/>

40) The New Jersey Law Against Discrimination(n.d.), *Transgender Student Guidance for School Districts*, <https://www.nj.gov/education/safety/sandp/climate/docs/Guidance.pdf> (검색일 2023.10.30.)

- c. 가이드라인에는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타 자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d. 교육감은 이 섹션에 따라 개발된 지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에 관한 현행 주 또는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침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지역 트랜스젠더 학생 가이드라인

시설 이용(Use of Facilities)

모든 학생은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락커룸 및 탈의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과 협력하여 모든 당사자가 시설 정책을 인지하고 학생이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락커룸 및 탈의실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부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그런 방식을 원하지만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성별로 구분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는 **개인용 성 중립 화장실(a single "unisex" restroom)**이나 양호실 화장실과 같은 안전하고 적절한 대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학생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탈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경우, 성별중립 화장실이나 양호실 화장실 같은 개인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교육청(School districts)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생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이나 락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학생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의 방향은 학생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4) 일본: 학교생활, 시설이용에 관한 대응(学校生活、施設利用における対応)⁴¹⁾

시설 이용에 대해 검토

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불쾌감이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는 동시에 본인의 의향이나 상황의 변화도 감안하면서 가능한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 화장실
호적상 성별과 다른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학생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의 사용이 바람직하지만, 주위의 이해, 시설면의 제약을 근거로 본인의 의

41) 金沢市, 金沢市教育委員会(2020. 3.), 「「多様な性」への理解の促進と支援のための金沢市職員・教職員ハンドブック」.

향을 존중하면서 일원적인 대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아래 사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a) 호적상 성별과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사용
- b) 교직원용 화장실을 사용
- c) 학교 내 다목적 화장실 사용 등

- 탈의실

주위의 이해나 시설면의 제약을 근거로 해 최대한 본인의 희망에 부응하도록 대응합니다. 서로 간에 신체
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자리이므로 다음과 같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 a) 빈 교실, 보건실 및 다목적 화장실 이용
- b) 시간대를 늦춰서 이용하기 등

5) 기타 시설 이용 관련 해외 사례

이외에도 미국 워싱턴주는 RCW 28A.210.420 개정법에서 2022-23학년도 초까지
학군 및 사립학교는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 위치한 모든 성
중립 화장실과 여학생 전용 화장실에 생리 위생용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6학년에서
12학년이 다니는 학교 건물에 성 중립 화장실이 없는 경우, 남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하나 이상 또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보건실에도 생리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⁴²⁾. 이는 트랜스젠더 남성 등 생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생리 위생용품을 이용하는 것을 차별없
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케어 시설법’⁴³⁾에 따라 사립 대안 기숙학교를 포
함한 모든 기숙학교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 교육 계획을 반드시 교육부에 제출
해야 하는데 이때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주제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역량과 감수성’⁴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설 내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을

42) RCW 28A.210.420 - Menstrual hygiene products,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210.420>

43) 2022 California Code Health and Safety Code - HSC DIVISION 2 - LICENSING PROVISIONS CHAPTER 3 - California Community Care Facilities Act ARTICLE 1 - General Provisions Section 1502.2., <https://law.justia.com/codes/california/2022/code-hsc/division-2/chapter-3/article-1/section-1502-2/>

44) 원문은 “Cultural competency and sensitivity in issues relating to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ies.”

포함한 사유에 기반한 차별금지, 성별표현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성적지향을 바꾸기 위한 시도(‘전환치료’)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도 명시되어 있다.

라. 개선안

1) 「교육시설법」 개정안

「교육시설법」은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 시설 및 환경 역시 모든 학생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시설법」은 제25조와 제26조에서 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과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을 추가·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정서,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내외 교육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 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p>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동일 5. 학교의 공간과 시설은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고, 모든 학생이 시설 이용에 있어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p>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p> <p>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 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p>	<p>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동일</p> <p>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 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성평등,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③ 동일</p>

현 행	개 정 안
<p>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③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2) 화장실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안

트랜스젠더 학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적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⁴⁵⁾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는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만약 학교에 성 중립 화장실이 별도로 생긴다면 성 중립 화장실을 이용할 마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81명 중 63명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응답도 12명이 되었는데, 그 이유로 “아웃팅 위험이 있어서”라고 답하였고, “다른 학생들이 괴롭히고 놀릴 것 같다”, “성 중립 화장실 보다 1인 전용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트랜스젠더 학교시설 이용 경험 수다회>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참가자들은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모든 화장실을 성 중립 화장실로 설치하는 것보다 남성, 여성 그리고 ‘모두의 화장실’의 3가지 유형이 다 있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아웃팅과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 중립적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트랜스젠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할 때, 기존의 성별 구분 화장실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된다. 성별 구분 화장실은 그대로 두면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 하나만을 추가하는 것은 자칫 트랜스젠더를 성별이분법적 틀을 벗어난 예외적인 존재로 만들고 낙인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건물 전체에 설치를 하고, 중단기적으로는 층을 나누어서 적어도 해당 층에 존재하는 화장실 전체를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설계, 설치할 필요가 있다(박한희, 2020).

45) ‘성 중립적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성별에 따른 구분을 없애는 것 외에도 장애, 개인의 조건, 동반자 등 유무도 고려한 화장실을 의미한다.(박한희(2020),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화장실의 평등**, p.65)

또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 낙인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교육 등 다른 정책과 병행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학교환경이 우선 조성이 되어야, 트랜스젠더 학생들도 편안하게 성중립적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단순히 ‘남녀공용’ 화장실이 아니라, 개별적, 독립적인 방실을 전제로 한다. 변기와 세면대를 갖춘 각각의 화장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내부 구조는 성별과 장애, 체형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휠체어 등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면적을 지녀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p> <p>가. 화장실의 설치기준</p> <p>(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p> <p>(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p> <p>(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p> <p>(4)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p> <p>(5)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p>	<p>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p> <p>가. 화장실의 설치기준</p> <p>(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 ‘성 중립적인 모두의 화장실’로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p> <p>(2) 동일</p> <p>(3) 삭제</p> <p>(4) - (5) 동일</p>

〈참고〉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신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다목적 화장실(행정안전부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

- 장애인 화장실과 별도로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신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 이외에는 사용을 양보해 달라는 안내표지를 설치

3) 탈의실, 기숙사 등 성별분리 시설 관련 법령 - 「학교체육진흥법」 등

탈의가 필요한 체육시간이 있는 날은 체육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탈의실과 샤워장 설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덜 침해하는 1인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기숙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1인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능하면 트랜스젠더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되, 트랜스젠더 학생 당사자가 믿을 수 있는 동료 학생을 룸메이트로 지정하거나 예상되는 어려움에 따라 종합적인 고려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때 당사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트랜스젠더 학생만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은 차별이며, 다른 학생이 트랜스젠더 학생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를 제기한다면 그 학생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은 1인용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나)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 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생선수기숙사는 원칙적으로 1인용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기숙사를 배정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숨)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p>	

4) 학교시설 전반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고려한 시설 설치 및 배치

성소수자 학생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 전제로 학교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학생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가 경시되거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그 상황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 관련하여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시설 내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한 법령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설을 계획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계지침으로 「장애인등 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등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학교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하여 제14조에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와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등을 포함한 통학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게 학교시설 전반을 배치하는 것인데,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에도 그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인 시설 설치와 배치가 고려되어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특수교육법·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신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목적 화장실(행정안전부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

- 장애인 화장실과 별도로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신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 이외에는 사용을 양보해 달라는 안내표지를 설치

3. 학교폭력 및 학교 안전

가.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 현행 규정의 보호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목적 조항에 따르면, 해당 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다루는 학교폭력의 범위는 넓은 편이다. 성소수자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우, 아우팅 협박을 당한 경우 등은 모두 현행법상으로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해결 절차를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사로부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거나,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소문이 퍼져 더 큰 피해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

년 실시한 연구(강병철, 2006)⁴⁶⁾에서 청소년 가운데 교사에게 커밍아웃을 한 후 거부적이었다는 반응이 66.7%, 수용적이었다는 반응은 33.3%로 거부적인 반응을 겪은 청소년들이 2배 이상이었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에서 겪는 폭력 경험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성소수자 중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51.5%에 달했고,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도 22.3%에 달했다. 2012년에 실시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참가한 서울 지역 성소수자 학생 255명 중 96%가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⁴⁷⁾. 2021년 휴먼라이츠워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언어적 폭력, 괴롭힘,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을 겪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확인되었다⁴⁸⁾.

연구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교사 이희진, 고영주는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학생 간 역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 하나하나만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제·개정 되어온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그 속에 담긴 학교폭력에 대한 관점 자체가 문제라는 점도 크게 지적해주었다. 다만 전반적인 학교폭력제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과제인 ‘성소수자 학생에게 포용적인 학교’를 위해서 현행 학교폭력 법제도가 최소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에서의 성소수자 배제

학교는 누구에게나 안전과 평등이 보장된 “교육에서 차별지 않을 권리(교육기본법 제 4조 제1항)”가 실현되는 시공간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사실상 학교라는 시공간은 성별이

46)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는 2006년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므로, 부득이하게 2006년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 역시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존재가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2013), **2012년 서울시 성소수자 학생 인권실태조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2015), *From Insult to Inclusion: Asia-Pacific Report on School Bully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5414> (accessed July 12, 2021)

48) Lowenstein et al.(2021),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키는 한국의 학교들」, Human Rights Watch.

분법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성규범이 재생산되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학교는 성별이분법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혈연관계를 정상 가족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위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성소수자를 비정상적 존재로 만든다. 그러한 공식적인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는 학교문화, 교사 등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이어진다.

2015년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성소수자”의 내용을 배제했으며, 심지어 성교육 표준안 연수 자료에는 “동성애에 대한 지도: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의 공식 자료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담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교사 차원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사가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수업시간에 다루거나 성교육에 포함했을 때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가 많다⁴⁹⁾.

게다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 이유를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성 정체성을 혼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이며, 청소년의 약 30%는 자신의 성적 소수자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공교육은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과정, 수업, 교사교육 등의 공교육의 영역에서 성소수자를 침묵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학교라는 시공간 안에서 성소수자는 없는 혹은 없어야하는 존재로,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학생과 교사를 비가시화 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폭력 등의 문제를 문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와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수준 교육과정, 성교육 표준안 등 정부의 공식적 문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까닭에 단위학교 수준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9) 박고은(2022.11.15.). **교실 속 성소수자 차별혐오, 교육과정 안 바꾸면 못 막는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67312.html>.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횟수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 안에는 성소수자 학생이 존재한다. 실제로 학교 안 성소수자 학생의 상당수가 교사 또는 동료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김정혜(2014)에 따르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모욕, 아우팅 협박, 불이익, 신체적 체벌 등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20%였으며, 동료 학생으로부터의 모욕, 아우팅, 아우팅 위협, 따돌림, 성희롱 및 성폭력, 신체적 폭력 등의 괴롭힘 경험은 무려 54%에 달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와 동법 제14조 제4항50)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와 즉시 해결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성소수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에 대하여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원의 감수성이 부재한 탓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소수자 학생 대상 폭력에 대해 감지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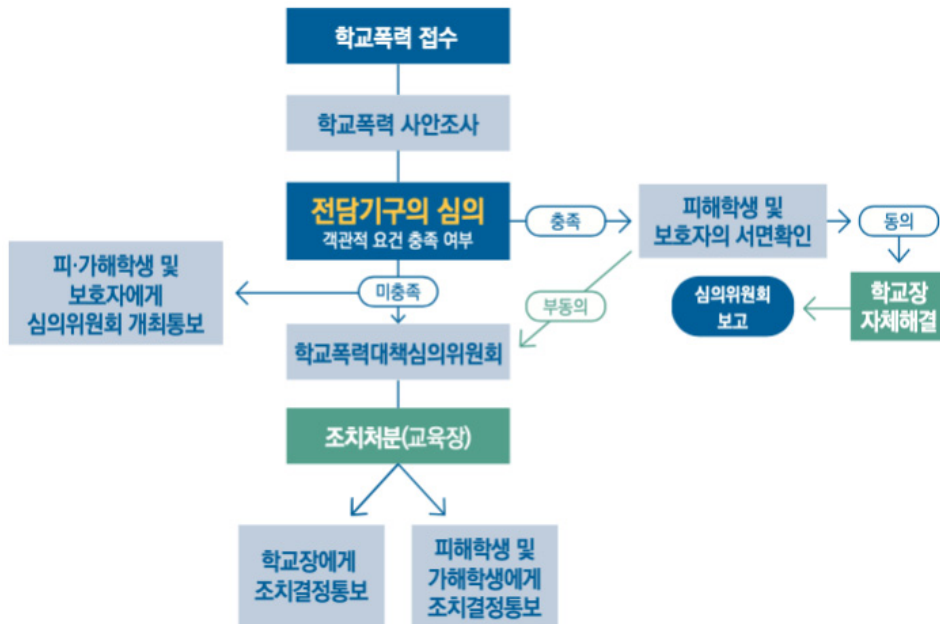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8년부터 위(wee)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학교 내 위(wee) 클래스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 학생의 괴롭힘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일부 상담교사는 성소수자를 비도덕적인 일로 여기거나 전환치료를 제공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⁵¹⁾ 또한 wee클래스 담당 교사들에게 성소수자 학생 인권은 거의 교육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Lowenstein et al., 2021).

즉 성소수자 학생들이 겪는 학교폭력은 일상적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이하 ‘사안처리 매뉴얼’), 학교 교육과정 그 어디에도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성소수자 학생은 성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이에 대해 학교나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학교폭력을 신고하더라도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일 역시 다반사일 수밖에 없다.

-
- 50)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51) 박고은(2021. 9. 14.), **성소수자 괴롭힘, 무대응과 차별 조장 정책의 산물**,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11613.html>.

3) 개별 학생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처리방식

아래 그림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제시하였다⁵²⁾. 학교폭력이 신고·접수 등으로 인지되면 학교는 14일 이내에 1)사안조사, 2)전담기구 심의, 3)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4)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그림 1]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

만약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성소수자성을 이유로 한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안을 1차적으로 조사·심의하는 전담기구(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 또는 소속 교원의 인권 감수성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된 행위가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폭력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사안 파악 과정에서 당사자의 성소수자 정체성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성소수자가 놓여있는 차별의 맥락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교육은 거의 부재한 것이 현

52) 교육부(2023), 2023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46

실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상해, 폭행, 감금 등 비교적 폭력의 발생과 가/피해 관계를 파악하기 쉬운 사안에 비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은 2008년 개정에서 학교폭력 유형에 성폭력을 추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면서도, 제5조 제2항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즉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적용을 우선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사안처리 매뉴얼에서도 성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 학교장 및 교직원 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장애 등 소수자 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위원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⁵³⁾ 사안처리 매뉴얼에는 심의위원회가 장애 등 소수자 학생과 관련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성소수자 학생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학교폭력 중 일부 사안의 경우 사안처리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1차적으로 관련 학생을 면담하는 학교 내 구성원에게 성폭력 피해자 학생,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소수자 학생 등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구체적인 매뉴얼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53)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10월 23일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신설되었다. 이에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필요한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지정의 주체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성소수자 감수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밀누설이 금지되어 있으며, 성소수자 학생 본인이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사 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신고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의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대해 담임교사 및 보호자에게 알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Lowenstein et al., 2021, p.26). 비밀누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6)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4) 교육적이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 교육적 가치보다 처벌 등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가영, 2019; 권혜정, 이선영, 2022).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48시간 내에 교육청에 신고 접수 및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기구는 지체 없이 사안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대응 매뉴얼(33-36쪽)에 전담기구 사안조사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의 확인서, 설문조사, 증거자료 수집,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사실 확인을 주요한 과정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사안 조사시 증점파악 요소를 폭력의 유형과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⁵⁴⁾. 그러다보니 전담기구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듯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대응은 인권친화적 접근이 아니라 법적 사안처리 절차가 우선시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 사안 조사 절차(예시)



참고 **전담기구 사안조사 시 유의 사항**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 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 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그림 2]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폭력 문제는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보다 이전의 예방이 훨씬 중요하며, 학교 폭력 예방은 담당교사나 상담교사 등 일부 교사의 역할이라기보다 학교 전체 교원이 관

54) 교육부(2023), 2023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33.

심을 가지고 일상적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행위중심으로만 단순 나열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하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을 사법절차와 유사한 사안처리방식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폭력 사안의 처리는 상위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전담하고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사안 조사의 역할보다는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접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⁵⁵⁾ 과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과 매뉴얼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전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은 포용적이지 않은 학교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학교폭력 대응은 단지 피해학생의 보호 또는 가해학생의 선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 55)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포용적인 학교 환경은 학교 안의 모두가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고 모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5) 학부모에 대한 교육 부재 문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는 크게 네 단위가 존재한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법 제7조56)가 있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법 제9조57)가 있다. 이 두 단위는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직접 대응하는 기구라고는 볼 수 없고,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구이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결정하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는 교육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법 제12조)와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학교 단위의 전담기구(법 제14조)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 56)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 57)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

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전담기구의 경우 법에서 구성원의 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여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교육 전문가이거나 변호사, 의사 자격 등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이기만 하면 되고, 다른 자격 요건은 없다. 이는 특정 계층의 학부모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부모이기만 하면 어떠한 전문성이 없어도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학교 차원에서 구성하는 전담기구의 경우에도 구성원인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고만 정해져 있고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

<p>년 이상인 사람</p> <p>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p> <p>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p> <p>4. 판사·검사·변호사</p> <p>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p> <p>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p> <p>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같은 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p>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씩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⁵⁸⁾,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된 학부모를 상대로 추가 교육 등을 실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심의나 조사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비롯하여 학교 내의 다양한 역동과 소수자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구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6) 완전하지 못한 비밀보호의무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겪었을 때 신고 등 해결 절차를 밟지 못 하는 큰 이유는 ‘아우팅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알리려면 우선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폭행 등 눈에 보이는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굳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갈등

58)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의 원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일이고, 따돌림이나 아우팅 협박 등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담당 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큰 부담이고,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반드시 ‘보호자’에게 보고된다는 사실도 학교폭력 피해 구제신청에 큰 문턱으로 작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⁵⁹⁾. 동법 시행령에 그 비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한다⁶⁰⁾.

한편으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는 규정이 있다⁶¹⁾. 이러한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 사

59)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60)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61)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건 처리 절차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보호자’에게는 반드시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어 있다.

모든 보호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커밍아웃 과정에서 가정 내 갈등을 겪는다. 단순히 갈등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정 안으로도 가져가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보호자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과정에서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자의 개입은 오히려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청소년 성소수자가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수용한 비율보다 거부한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⁶²⁾.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이를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당사자인 피해학생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피해학생이 자신의 정체성 등 특정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 학생의 정체성 정보가 보호자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성소수자 학생이 아우팅 이후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당사자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보호자에 대한 별도의 상담이나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근거가 「학교폭력예방법」 및 사안처리 매뉴얼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2) 65p

나. 해외 사례⁶³⁾

1) '학교폭력' 개념의 확장

미국 뉴욕주의 '교육법'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의 정의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학생의 교육적 성과, 기회 또는 혜택'을 방해하거나, '위협, 협박 또는 괴롭힘에 의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의 학교폭력예방법이 행위유형만을 나열하여 괴롭힘 등 행위가 발생하게 된 맥락이나 학생 간 위력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예시이다. 미국 오리건주도 '학생의 심리적 안녕을 방해함으로써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행위'를 괴롭힘, 따돌림에 관한 정의로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미국 뉴욕주 '교육법'

7. "괴롭힘" 및 "따돌림"은

- (a) 학생의 교육적 성과, 기회 또는 혜택 또는 정신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 건강을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효과가 있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행위 또는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한 위협, 협박 또는 괴롭힘에 의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 (b) 학생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를 합리적으로 유발하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 (c)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정서적 상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 (d) 학교 밖에서 발생하여 학교 환경 내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위, 위협, 협박 또는 괴롭힘이 학교에서도 발생할 것이 예측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 및 따돌림 행위에는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 피부색, 체중, 출신 국가, 민족, 종교, 종교적 관습, 장애, 성적 지향, 성별 또는 성별에 근거한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의 목적상 "위협, 협박 또는 괴롭힘"라는 용어에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동이 포함됩니다.

미국 오리건 주법 ORS 339.351

오리건주의 괴롭힘 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사이버 불링,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사이버 불링"은 전자 통신 장치를 사용하여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63) 학교폭력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번역: 김주현

- (2)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은 아래의 행위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a) 학생의 교육적 혜택, 기회 또는 성과를 크게 방해하는 행위;
 - (b) 학교 부지 또는 그 인접 지역, 학교 주회 활동,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 또는 공식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행위;
 - (c) 다음의 영향을 가지는 행위:
 - (A) 학생을 신체적으로 해하거나 학생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 (B) 학생이 학생 또는 학생의 재산에 대한 신체적 해를 당하거나 재산이 손상될 것을 합리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행위;
 - (C) 학생의 심리적 안녕을 방해함으로써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행위;** 및
 - (d) 행위가 특정 보호 계층의 지위를 기반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2)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안전한 학교’ 개념

미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학교가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교육법 등에서 이른바 ‘안전한 학교’, ‘포용적인 학교’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교’ 법령에서는, 네바다 주 소재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 등 구별되는 특성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학업 및 개인적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하는 학습환경을 제공한다고 선언하고 있다⁶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안전한 학교법(Safe Place to Learn Act)’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내의 모든 학교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포함한 특성을 근거로 한 차별, 괴롭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교직원 등 학교의 책임과 사건 처리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법(Educational Code)
ARTICLE 5.5. 안전한 학교법(Safe Place to Learn Act)

234. (a) 이 조항은 안전한 학교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64) “The public schools in this State provide a safe and respectful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persons of differing beliefs, races, colors, national origins, ancestries, religions, gender identities or expressions, sexual orientations,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sexes or any other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r backgrounds can realize their full academic and personal potential;” (https://www.leg.state.nv.us/Session/78th2015/Bills/SB/SB504_EN.pdf) (검색일 2023. 11. 9.)

- (b) 모든 지역 교육 기관이 차별, 괴롭힘, 폭력, 협박,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입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과 학생과 학교 및 지역사회 간의 연결을 개선하는 것이 주 정부의 정책입니다.

234.1 교육부는 섹션 64001의 (b)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규정집 5장 1절 5.3장(섹션 4900으로 시작)의 요건과 이 장의 준수 여부를 지역 교육 기관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검토의 일환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범주별 프로그램 모니터링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 기관이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 (a) 이민 신분을 포함하여 형법 422.55조 및 본 규정 220조에 명시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 장애, 성별,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지향 또는 이러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과의 연관성에 근거한 차별, 괴롭힘, 협박 및 괴롭힘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정책에는 해당 정책이 지역 교육청 관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활동 또는 등교와 관련된 모든 행위와 지역 교육청을 관할하는 정책 및 절차를 제정하는 지역 교육청의 이사회 또는 기관, 학군 교육감 및 카운티 교육감의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b) 이민 신분을 포함하여 형법 422.55조 및 본 규정 220조에 명시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 장애, 성별,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지향 또는 이러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과의 연관성에 근거한 차별,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및 조사하는 절차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신고 처리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1) 교직원이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개입이 안전할 경우 즉시 개입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건.
 - (2)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대한 신고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해당 학군 관할 하에 있는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합니다.
 - (3)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신고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항소 절차.
 - (4) 이 절차에 따라 작성되는 모든 양식은 섹션 48985에 따라 번역되어야 합니다.
- (c)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a)항에 따라 채택된 차별 방지, 괴롭힘 방지, 협박 방지 및 따돌림 방지 정책을 학생, 학부모, 직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일반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는 섹션 48985에 따라 번역되어야 합니다.
- (d) (1) (c)항에 기술된 공표와 관련하여, 지역 교육기관에 고용된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현장 직원에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LGBTQ) 학생의 지원과 관련된 기존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정보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종교적 소속으로 인식되는 이유로 편견이나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2) 이 하위 항목에서 사용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 (A) **학교현장직원**에는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또래지원 또는 친목클럽 및 조직, 안전한 공간, 상담 서비스,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반차별 교육 또는 기타 교육을 받았거나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하는 직원, 성소수자와 관련 있는 보건 및 기타 교과 과정 자료, 섹션 32283.5에 따라 개발된 온라인 교육, 관련 민원 절차를 포함하여 이 문서에 따라 채택된 기타 정책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B) **커뮤니티 자원**에는 성소수자 학생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 성소수자 학생을 치료하거나 지원한 경험이나 훈련이 있는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e) 교직원 라운지 및 학생 회의실을 포함한 모든 학교 및 사무실에 (a)항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게시합니다.
- (f) 최소 한 번의 검토 주기 동안 신고 사항 및 그 해결에 대한 문서를 보관합니다.
- (g) 신고자가 보복으로부터 보호받고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주장하는 신고자의 신원이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 (h) 지역 교육청의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5장 1절 5.3장(섹션 4900으로 시작)의 요건 및 이 장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청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i)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본 섹션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 종교 기관과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안전한 학교 환경 계획’ 규정을 두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에 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각 지역 및 지방 교육위원회에서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환경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기할 점은 코네티컷주에서는 ‘학군 안전한 학교 환경 코디네이터’, ‘안전한 학교 환경 전문가(Safe School Climate Specialist)’, ‘안전한 학교 환경 위원회’를 설치, 지정하여 학군과 학교 단위에서 모든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감독, 신고 및 조사 기록 수집 및 유지, 예방 및 식별과 대응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코네티컷 일반 법령 제10-222d조

안전한 학교 환경 계획

섹션 10-222d. 안전한 학교 환경 계획. 정의. 학교 환경 평가.

- (b) 각 지역 및 지방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괴롭힘 및 청소년 데이트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환경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1) 학생이 익명으로 학교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학년 초에 학생과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생이 그러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통지해야 하며,
 - (2)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괴롭힘이 의심되는 경우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3) **괴롭힘 행위를 목격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 직원은 섹션 10-222k에 설명된 안전한 학교 환경 전문가에게 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전문가가 부재한 경우 다른 학교 관리자에게 해당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후 1수업일 이내에 구두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구두 신고를 한 후 2수업일 이내에 서면 신고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 (4) **안전한 학교 환경 전문가가 모든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검토 또는 감독하고 이 섹션에 따른 서면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를 완료하며,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및 피해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러한 조사 시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 (5) **안전한 학교 환경 전문가가 익명 신고를 검토하도록 요구하되, 익명 신고에만 근거한 징계 조치는 취해서는 안 되며,**
- (6) 학교 직원이 괴롭힘 및 청소년 데이트 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섹션 10-222g에 정의된 예방 및 개입 전략을 포함하며,
- (7) 학생 행동 강령에 괴롭힘에 관한 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 (8) 각 학교는 확인된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피해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본 하위 섹션 (4)항에 기술된 조사가 완료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구두 및 전자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해당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섹션 10-222r에 따라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섹션 10-4a 및 10-4b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구제책에 대한 일반 언어 설명을 참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9) 각 학교는 피해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회의에 초대하여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취하고 있는 조치와 추가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및 절차를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 (10) 각 학교는 추가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을 논의하기 위해,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이 하위 섹션의 (9)항에서 요구하는 회의와는 별개의 회의에 초대하여야 하고.
- (11) 각 학교가 해당 학교의 괴롭힘 신고 및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해당 학교의 괴롭힘 행위 확인 건수 목록을 유지하며 해당 목록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교육청에 해당 건수를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 (12) 한 개인에 대한 반복적인 괴롭힘 사건 또는 동일한 개인에 의한 반복적인 괴롭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과 징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사례별 개입을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 (13)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도움을 주는 개인에 대한 차별과 보복을 금지하여야 하고,
- (14) 괴롭힘 행위를 당한 학생을 위한 학생 안전 지원 계획의 개발을 지시하여 추가 괴롭힘 행위로부터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가 취할 안전 조치를 다루어야 하고,
- (15)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사람이 괴롭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 (16) (A) 학교 운동장, 학교 안팎의 학교 관련 활동, 행사 또는 프로그램, 스쿨버스 정류장, 지역 또는 지역 교육청이 소유, 임대 또는 사용하는 스쿨버스 또는 기타 차량, 또는 지역 또는 지역 교육청이 소유, 임대 또는 사용하는 전자 기기 또는 전자 모바일 기기 사용을 통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B) 학교 밖에서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i) 해당 괴롭힘을 당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ii) 학교에서 그러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iii) 교육 과정 또는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해당 괴롭힘을 금지하여야 하며,
- (17) 매 학년 초에 각 학교는 모든 교직원에게 학군의 안전한 학교 환경 계획의 서면 또는 전자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18) 모든 교직원들은 매년 섹션 10-220a 또는 섹션 10-222j에 설명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8)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및 이 하위 섹션의 (9)항에 따라 요구되는 초청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학교 직원의 대응과 추가 괴롭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미국 뉴욕주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직원에게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지침을 제시하면서 ‘차별없는 교육 및 상담 방법의 개발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모든 학교의 교직원 한 명 이상이 인종, 피부색, 체중, 출신국가, 민족, 종교, 종교적 관습,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에 관한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13. 정책 및 지침.

교육위원회와 모든 학교의 수탁자 또는 단독 수탁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책,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략)

2. 괴롭힘, 왕따, 차별의 발생을 억제하고 학교 직원들에게 괴롭힘, 왕따, 사이버 괴롭힘, 차별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시키기 위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고안된 지침:
 - a. 잠재적인 괴롭힘, 따돌림 및 차별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과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 b. 교직원이 괴롭힘, 따돌림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 차별 없는 교육 및 상담 방법의 개발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모든 학교의 교직원 한 명 이상이 인종, 피부색, 체중, 출신 국가, 민족, 종교, 종교적 관습, 장애, 성적 지향, 성별 및 성별 분야의 인간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4. 학생에 의한 괴롭힘, 따돌림 또는 차별 사례에 대한 측정되고 균형 잡힌 연령에 적합한 대응의 개발과 관련된 지침은 개입, 훈육 및 교육을 적절히 사용하는 점진적 모델에 따른 구제 및 절차를 포함하며 행동의 성격, 학생의 발달 연령 및 학생의 문제 행동 이력에 따라 방법이 다양하며 학교의 행동 강령과 일치해야 합니다.
5.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피부색, 체중, 출신 국가, 민족, 종교, 종교적 관습, 장애, 성적 지향, 성별 또는 성별에 근거한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괴롭힘, 왕따 및 차별의 사회적 패턴, 교육 환경에서 배제, 편견 및 공격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유타 주는 행정명령으로 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받아야 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에 대해서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⁶⁵⁾.

- (6) (a) LEA는 학생, 교직원, 코치, 자원봉사자가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따돌림, 보복, 학대 행위에 대한 교육을 그러한 교육을 제공할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부터 받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b) (6)(a)항에 명시된 교육에는
- (i)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A)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따돌림 보복 및 학대 행위,
 - (B) 다음 연방법에 따른 차별에 대한 정보: (I) 1964년 민권법 제6장, (II) 1972년 교육 수정법 제9장, (III) 1973년 재합법 제504조, (IV) 1990년 미국 장애인법 제2장,
 - (C)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따돌림 보복 및 학대 행위가 차별과 어떻게 다르지, 서로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 (D)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종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기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 또는 고정관념의 부합 또는 불충족을 포함하여 학생 또는 직원의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에 근거하여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따돌림, 보복 및 학대 행위가 어떻게 금지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 (E) 언론의 자유 권리와 학생, 직원 및 학부모의 언론의 자유 권리가 어떻게 다르지,
 - (ii) 규칙 R277-620에 따라 학생에게 요구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53G-9-704(1) 하위 섹션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자살 예방 교육을 보완하고,
 - (iii) 이 규칙과 관련된 문제가 학생 또는 직원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7) (6)항에 기술된 교육은 (a) 신규 교직원, 코치, 자원봉사자에게 고용 또는 근무 첫해에, (b) 모든 교직원, 코치, 자원봉사자에게 최초 교육 후 최소 3년에 한 번씩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주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서, ‘괴롭힘 예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으로 ‘교사, 교육기관의 관리자, 학교 정신건강 전문가, 보호자, 청소년, 직접 서비스 제공자, 권리옹호자(Advocates)’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태스크포스 구성에 있어 ‘지리적, 사회경제적 다양성은 물론 기타 형태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In constituting this task force, the Mayor shall consider geographic

65) 미국 유타주 행정규칙국, <https://adminrules.utah.gov/public/rule/R277-613/Current%20Rules> (검색일 2023. 11. 9.)

and socioeconomic diversity as well as other forms of diversity)’고 규정하고 있다⁶⁶⁾.

4) 학교폭력 사안 처리기구 및 처리 절차

미국 델러웨어주 학교 괴롭힘법은 각 학군에서 수립해야 하는 정책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각 학교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 및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표적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f. 각 학교는 행정부가 적시에 신속하게 조사하여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에는 괴롭힘의 대상이 인종, 나이, 결혼 여부, 신념, 종교, 피부색,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또는 표현 또는 출신 국가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표적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하위 섹션은 학교가 특정인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이유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 법제도 개선방안

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방안

결국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전반적인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단순히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동적인 사후 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작동하는 절차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성소수자 학생에 대하여는 국가 차원의 연구 등도 전무한 현재 상황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직접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금지하고 있는 해외 법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별사유에 근거한 괴롭힘’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신설

66) 미국 컬럼비아주 의회 홈페이지, <https://code.dccouncil.gov/us/dc/council/code/sections/2-1535.02> (검색일 2023. 11. 9.)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것과 사건처리 절차 과정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p>현행 법안 (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일부개정)</p>	<p>개정안</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p> <p>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p> <p>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p> <p>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p> <p>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p> <p>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차별사유에 근거한 괴롭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의2. - 1의3. <현행과 동일></p> <p>1의4. “차별사유에 근거한 괴롭힘”이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성별정체성,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p> <p>2.-5. <현행과 동일></p>

<p>현행 법안 (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일부개정)</p>	<p>개정안</p>
<p>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④ <현행과 동일></p> <p>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는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p> <p>⑥ - ⑧ <개정></p> <p>제16조의5(성소수자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성소수자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성소수자학생인 경우에 심의과정에 성소수자 지원기관의 전문기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③ 제20조에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성소수자학생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2) 학교폭력시행령 및 매뉴얼 개정방안⁶⁷⁾

가) 시행령 개정 방안

(1) 실태조사에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 관련 내용 포함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조항 신설

성소수자 관련 학교폭력은 실재하고 그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보호자 등의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부재 등을 원인으로 학교폭력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있어서 장애, 다문화,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가 적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학교 수준에서의 대응 방안이 충분히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연 2회 16개 시도교육감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9.6.)⁶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영역		문항내용	문항척도
기본문항	목격경험	1. 목격경험 여부	명목척도
		1-1. 목격 후 행동	
		1-1-1. 목격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	
	향후 목격 시 대처 방법	2. 향후 학교폭력 목격 후 대처방법	명목척도
	피해경험	3. 피해경험 여부	명목척도
		3-1. 피해유형	
		3-2. 피해빈도	
		3-3. 가해자 유형	
		3-4. 피해시간	

67) 김정혜(2014), **학교 내 차별실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권혜정, 이선영(2022),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처리 절차의 문제점 고찰 및 대안적 접근**, 법과인권 교육연구; 이가영(2019),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태 및 개선 방안**, 교육법학연구; 한유경 외(202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Lowenstein et al.(2021),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Human Rights Watch.

68) 교육부(2022. 9. 6.),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영역		문항내용	문항척도
		3-5. 피해장소	
		3-6. 피해 후 힘든 정도	순위척도(4점)
		3-7. 피해사을 알린 대상	명목척도
		3-7-1. 피해알림 후 도움 정도	순위척도(5점)
		3-7-2.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범주형
	가해경험	4. 가해경험 여부	
		4-1. 가해 유형	명목척도
		4-2. 가해 이유	
		4-3. 가해자 후(한 명 또는 집단)	
		4-4. 피해자에 대한 공감	순위척도(3점)
		4-5. 가해 지속 여부	
		4-5-1. 가해 지속 이유	명목척도
	4-5-2. 가해 중단 이유		
	배경문항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만족도
학교공부 흥미도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배경		가족 간의 대화정도	
		부모의 관심	
	가정 만족도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교장자체해결제’ 인식 여부	명목척도	
신고문항	경험신고	목격 또는 피해 경험에 대한 신고 의사	명목척도
		(1) 누가	주관식
		(2) 누구에게	
		(3) 언제	
		(4) 어디서	
		(5) 무엇을, 어떻게	
		(6) 왜	
추가문항 (무경험 학생 대상)	학교폭력 대처 효능감	학교폭력 대처 효능감	순위척도(5점)
	예방교육 선호도	예방교육 담당자 선호도	명목척도
		예방교육 방법 선호도	
		예방교육 내용 요구 선호도	

영역		문항내용	문항척도
추가질문 (목격 또는 피해 유경험 학생 대상)	목격경험 해결 여부	목격 경험 해결여부	명목적도
	피해경험 해결 여부	언어폭력 해결 여부	명목적도
		강요 해결 여부	
		금품갈취 해결 여부	
		신체폭력 해결 여부	
		성폭력 해결 여부	
		사이버폭력 해결 여부	
		스토킹 해결 여부	
		집단따돌림 해결 여부	

전수조사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맥락,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을 개별 학생들끼리의 분쟁으로 접근하여 실태조사가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있어서 학교폭력이 동등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힘의 불균형과 편견에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한 조사가 필요하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의 경우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에 있어 “힘의 불균형 및 반복성, 편견에 기인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학교 안에서 어떤 학생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편견이나 배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단지 처분이 아니라 교육과 학교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에 ‘차별사유에 근거한 괴롭힘’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포함되어 개정된다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 다문화,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실태, 학교문화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태조사가 조사와 결과 발표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학교폭력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그 조사가 적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학교 수준에서의 대응 방안이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실태조사에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에 대한 피해 경험 내용을 추가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현 행	개 정 안
<p>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신설></p>	<p>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동일></p> <p>③ <u>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성소수자, 다문화, 장애 등 소수자 학생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u></p> <p>④ <u>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재발방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u></p>

(2)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 인권보호 내용 포함

매 학기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성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만 시행령에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 학생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p>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장애와 다문화 학생의 인권보호 내용에 대해서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에는 장애와 다문화 학생 이외에도 성소수자 학생이 존재

하며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폭력이 일상적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더불어 이 내용을 매뉴얼이 아니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교육적 접근에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대상	횟수	방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제2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제4호)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시행령 제17조제5호)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시행령 제17조제6호)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함.

[그림 3]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내용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p>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동일> 2. <u>학교폭력 예방교육시 성소수자, 장애,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신설> 3. - 5. <번호 개정> 6.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u>학교폭력 유형과 성소수자, 장애,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 내용</u>,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u>학교폭력 유형과 성소수자, 장애,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 내용</u>,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담기구의 인권적 운영과 인권 교육 필수 이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단위학교의 전담기구는 사안 조사부터 이후 조치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 인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구 소속 교원인 교감, 보건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및 전담기구 참여 학부모 등의 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전담기구 구성원은 반드시 일정정도의 인권교육을 이수한 이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는 인권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요구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인권 감수성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교사 등의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부재로 인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이 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시화되지 못했던 성소수자 관련 피해를 학교 안에서 가시화하고 공론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p> <p>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p>	<p>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현행과 동일></p> <p>② 전담기구 구성원은 성소수자, 장애, 다문화 등 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p> <p>② - ③ <번호 개정></p>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방안

‘성소수자 학생에게 포용적인 학교’를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동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이 필요하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대응에 있어서, 법률보다 매뉴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까닭이다.

(1) 성소수자 학생 면담시 유의사항 제시

현행 사안처리 매뉴얼에는 장애, 중도입국, 외국인, 탈북 학생 등과 면담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소수자 학생과의 면담 유의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 내 교사 등의 인권 감수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지만 필요시 전문가의 동행 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소수자 학생 관련 사항의 경우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전담기구 사안조사 시 유의 사항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 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입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 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그림 4]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제시된 사안조사 유의사항

사안처리 매뉴얼이 관련 법과 시행령을 정리한 문서로 기능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의 영역을 세분하고 각 영역에 따른 유의사항을 예시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 및 지원 내용 포함

현행 사안처리 매뉴얼의 피해 및 가해 학생 조치(제2장)에 장애, 다문화, 탈북 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에 명시되어 있으나 다문화, 탈북 학생의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안처리 매뉴얼에 이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안에서 다문화, 탈북 학생이 편견에 의한 폭력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며, 더불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 탈북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탈북 학생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 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탈북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켜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또는 탈북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 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다문화, 탈북학생의 보호와 지원내용

4.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가. 성소수자 학생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

미한다(이인호, 2004, p.3). 이인호(2004)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익명권(정보주체가 정부 등의 타자와 온라인 교섭 또는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자유), 정보처리금지청구권(기본적인 정보처리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정보처리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열람 및 갱신청구권(타인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가 이를 열람하여, 그 정확성과 최신성 및 완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각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는 조문으로 규정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 역시 사생활 정보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은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3) 성소수자 학생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⁶⁹⁾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최소화해야 한다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 학교 입학, 생활지도 등의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 성적지향에 관한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기관에 수집·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한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고 처리되는 범위가 확대될수록, 그로 인한 생활에서의 불편감이나 아우팅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 학생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그 수집에 있어 구체적인 목적이거나 용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69) 이인호(2004), 같은 글, 제9 내지 12면을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에 적용하여 서술함

정당하고, 수집 범위가 최소한이어야 하며, 수집의 방식이 합리적이고, 그 수집·이용·제공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학생에게 개인정보의 열람·갱신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 학교에 수집된 본인의 주민등록상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열람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열람·갱신요구가 거부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 수집된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성소수자 학생 스스로 이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수정이나 삭제가 어렵다면, 해당 기입정보에 대한 학생 본인의 진술(해당 정보가 부정확하다, 부당하다는 의사 등)을 함께 기록할 수 있는 권한 등 적절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제공은 학생의 명시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의 정보가 본인이 원치 않는 범위의 상대방에게까지 제공되지 않도록, 정보제공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상 성별 정보는 관련 법령 등에 민감정보로 분류되지 않아 그 처리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통설과 달리, 성소수자 학생에게는 주민등록상 성별 정보가 통용되는 범위 역시 본인의 성별정체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도 민감정보의 일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에게 학생의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절차 등을 설계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통해 성소수자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책임지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관련 정보의 암호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성소수자 학생 가운데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등 특히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소수자성이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현행 규정과 그 대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나. 현행 법제도 : 입학에서 졸업까지

1) 학생의 기본정보 수집 및 기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학교생활기록부

가) 학생 정보관리 시스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11월부터 교육행정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NEIS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각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NEIS가 관리하는 정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정보, 입·진학정보, 보건정보(문제된 3개 영역) 외에 인사, 예산, 회계 등 모두 27개 영역의 학생정보 및 행정정보다. NEIS를 통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DB서버로 위 학생정보 등이 수합되고, 이들 DB는 인터넷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의 DB와 연결된다(이인호, 2004).

교육부는 NEIS를 통한 학생정보 집적의 법적근거로는 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구,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 구,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⁷⁰⁾, 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⁷¹⁾, 구, 학교보건법 제7조, 구,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구,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⁷²⁾, 그리고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들고 있다.⁷³⁾

70) 교육부 훈령 제633호. 2002. 12. 20. 발령 및 시행

71) 교육부 훈령(제587호 1999. 4. 29. 제정; 제616호 2001. 3. 29. 3차 개정)

72) 교육부 훈령(제584호 1999. 3. 18. 제정; 제632호 2002. 12. 20. 2차 개정)

구, 전자정부법

제8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구,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구, 학교보건법

제7조 (신체검사) ① 학교의 장은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구, 학교신체검사규칙(교육부령 제779호)

제9조(신체검사 결과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관리하여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신체 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 활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학할 때에는 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 기록부를 이관하고,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때에는 그 진학하는 상급학교의 장에게 이를 이관한다.

구,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파 일을 보유할 수 있다.

73) 헌법소원심판(2003헌마282)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서 참조

더불어 2012. 3. 21. 전문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 역시 NEIS와 관련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을 포함한 학생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관리해야 하며, 학생정보는 부모 등 보호자 외에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제23조의3).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규정들은 학생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라는 DB를 통해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넘어선 지역교육청,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 등이 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주된 목적은 ①학생지도와 ②상급학교의 학생선발로 볼 수 있다(제25조 제1항). 학교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

는데, 학생의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인적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부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인적사항으로 기재할 구체적인 기재내용을 학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표시되는 성별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는 행동특성과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을 기록하면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실무에서는 담당(담임교사)이 학생의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관하여 작성하더라도 부장, 교감, 교장의 결제를 거치게 되므로 관련 내용이 걸러질 수 있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내용 등. 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생정보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외에 추가로 성별 정보도 따로 수집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1항).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학교명을 밝히게 되므로 단성학교에서 전학을 오거나, 단성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 성별 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게 된다(제7조 제3항). 행동특성과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는데 이는 누적한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된다(제16조 제1항). 기타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입학연도의 천연색 상반신 사진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졸업할 때는 졸업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4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인적·학적사항)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 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7과 같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④ ‘사진’란에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cm×4.5cm, 전산자료)을 입력하며, 졸업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하 “기재요령”)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하는 것으로 학교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다. 2023학년도 기재요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가지 종류로 발간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1쪽

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인적·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사항 등)의 구체적인 기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기재요령은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5쪽
1. 제7조(인적·학적사항) 가. 학생의 성명, 성별 ,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학생의 인적·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에는 성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이때 성별은 남과 여로만 구분하여 표기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7번째 숫자를 성별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7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인적·학적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① 학생정보</td> <td style="width: 20%;">성명 :</td> <td style="width: 20%;">성별 :</td> <td style="width: 45%;">주민등록번호 :</td> </tr> <tr> <td></td> <td>주소 :</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학적사항</td> <td>년 월 일</td> <td><input type="checkbox"/>중학교 제3학년 졸업</td> <td></td> </tr> <tr> <td></td> <td>년 월 일</td> <td><input type="checkbox"/>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특기사항</td> <td colspan="3"></td> </tr> </table> </div> <p>① 학생정보 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성별은 '남' 또는 '여'로 구분하여 입력함. ※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입력함. 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국적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함.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p>	① 학생정보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② 학적사항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제3학년 졸업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③ 특기사항			
① 학생정보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② 학적사항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제3학년 졸업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③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 담임 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29쪽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가 기록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서 입력함.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32쪽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재량으로 문장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아래의 내용은 어떠한 항목으로도 기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 학교 진학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과 관련한 기록을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9-21쪽

1.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 이어야 함.
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 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 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사. 도서출간 사실
-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1(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2) 등
- 파.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이외 항목 입력 불가
4.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
5.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함.
-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됨.
6.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정정 권한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유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입력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 작성이 종료되면 학교생활기록을 정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지만,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당해 학년도에 작성이 종료된 기록은 이후에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정정하도록 하고, 인적·학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정정한 자료는 정정대장으로 보관해두어야 하는데, 이를 행정기관이나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제19조 제3항 및 제5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10의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10의1조)을 제공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학적사항' 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제18조 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기재요령〉에서는 재학 중 개명으로 인해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본인의 개명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과 기본증명서, 여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으로 처리하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으로 처리한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7-38쪽

가.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탭에서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졸업생의 경우에도 학생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졸업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정을 요구하려는 경우 학적을 관리하는 학교의 학교장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정대장은 상급학교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10] 1조의 서식으로 전송되지만, 상급학교에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온라인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40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입력자(사용자)는 그 입력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료입력 당시 사용자가 자료검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발견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정정한다. 정정입력이 완료되면 입력 내용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각종 보조자료의 내용과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다.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중전의 모든 학교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0의 1조 서식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업무담당자가 수행함.

2.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

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전자결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정정사유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목성적 재산출과 보조부(교과목 성적일람표 등)의 정정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또한, 수상대장에 반영된 수상경력의 정정 시 '수상대장 반영여부'를 선택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다.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의 정정은 가능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단순 오·탈자가 포함된 쪽의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한다.

2) 입학

가) 초등학교 입학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이를 위해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때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동조 제7항).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시로 '취학아동명부서식'(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16호)(20080801)을 제정하였는데, 해당 서식에 따르면 취학아동에 대한 명부 작성시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취학아동의 성별정보가 수집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취학아동명부서식(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16호)(20080801)

일련번호	아동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나)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이후 중학교 입학 시에는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일부로서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이행한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동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이는 고등학교 입학 시에도 마찬가지이다(동법 제4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점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준용) ①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시 학생의 성별정보 수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학칙이나 입학 업무와 관련한 교육청의 매뉴얼이 존재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학칙 매뉴얼에는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적령아동과 학령아동을 본교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취학아동명부 상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학생의 성별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전북교육청,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 안내서(2020), 제18면).

○○ 중학교 학교 규칙(예시)

제13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적령아동과 학령아동을 본교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학칙 매뉴얼에는 ‘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며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으로 하되,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통해 학생의 성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전북교육청,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 안내서(2020), 제25면).

○○ 고등학교 학교 규칙(예시)

제17조(입학 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입학전형방법) 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며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으로 하

되,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21조(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는 학교에 입학 서류(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업무편람⁷⁴⁾을 보면 해당 입학원서에 학생의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023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후기고 서식 1〉		기관명		접수자(인)	
		입학원서		전화번호 <small>※ 배정 발표일에 개별 문자 통보 (전화번호 변경불가)</small>	학 교
	보호자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주 소	주요주소	시(도) 구(시,군) 길(로)			
	상세주소	동 호(00동, 00APT)			
	<small>※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도로명주소)를 주요주소와 상세주소로 나누어 기재(서울 및 타시도 거주자)</small>				

3) 출결 관리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출결상황은 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때 생활기록에 기재되는 출결상황의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74) 서울특별시교육청(2022. 9.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 - 진학자료실 -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업무편람.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출결상황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자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이처럼 관련 법령상 출결 정보에 학생의 성별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않으며, 현장에서 출결을 관리할 때는 각 교사의 재량에 따른다. 다만 출석부에 성별이 유추되는 성명, 학생의 사진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출석부를 통해 성별정체성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인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 건강검진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교건강검사 시 작성하는 문진표 서식에 학생의 성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학생건강,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에도 학생의 성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신체능력검사를 여성과 남성 두 성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에도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학생의 성별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 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학생 건강기록부

(앞쪽)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
학 교	학 년	반(이수과정 / 학과)		번 호	담 임 성 명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 9.>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 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호
성 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5) 생활: 일기장, 소지품 검사, 명찰 착용

가) 일기장, 소지품 검사

2022. 12. 27.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된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 9. 27.에는 제2항에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3. 9. 1. 교육부는 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다. 그 중 제12조 제8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9항은 소지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10항에서는 학생의 소지품을 조사하고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 제3호 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확인하면서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단서를 두어 예외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학생의 일기장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12. 21.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라는 제목으로 정책권고를 하였다. 그중에는 소지품검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⁷⁵⁾

따라서 학칙에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사안,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학생의 소지품 검사 등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사안**, 성적, 징계, 교내CCTV 설치 및 운영 등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안 등이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절차나 방법에서도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3. 25.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가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⁷⁶⁾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나) 이름표 등 표식

학생이 반드시 이름표를 부착해야 하는지, 그 이름표가 성별에 따라 색상이나 디자인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인지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고, 학교마다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학칙)을 통해 정하고 있다. 최근의 대부분 학교생활규정은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75)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학교 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76) 국가인권위원회(2005. 3. 25.),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규정의 예시

제00조(명찰 및 신발)

(1) 명찰은 소정의 위치에 부착하고,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제00조(복장 및 명찰)

5. 명찰을 착용하고자 희망하는 학생은 탈부착형 명찰 등 자유롭게 패용할 수 있다.

제00조(용의 복장)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음 항목을 준수한다.

① 명찰 및 교표는 교복에 부착하며, 명찰은 호주머니형 명찰을 사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11. 25. 학교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고정·부착형 이름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하도록 각 권고했다.⁷⁷⁾ 그러나 성별에 따라 색상이나 디자인을 구분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권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6) 상담

가) 교내 상담

학교 내 상담과 관련하여 학생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 현행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각 지역 교육청별로 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밀 누설의 금지 의무를 두거나, 상담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경우가 있다. 이때 후자의 규정은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도 누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상담일지 등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정보를 포함할지 여부는 각 교사의 재량에 따르고 있다.

77) 국가인권위원회(2009. 11. 25.), [보도자료]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 강요는 인권침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제11조(비밀보장) 학생상담담당자 등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나) 그 외 : 위센터 등

위(Wee) 프로젝트는 2008년 학교폭력·학업 중단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요인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Education)을 통해 건강한 마음(Emotion)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학생 위기상담·지원 사업」이다.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이다. 학교에는 위(Wee) 클래스, 교육지원청에는 위(Wee) 센터, 교육청에는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센터, 병원형 위(Wee)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기관, 117신고센터 등이 개설되어 있다.⁷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사업 기관에 ‘부적응 학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사업기관의 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합된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78)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https://www.wee.go.kr>) 소개글 참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사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기관"이란 교육감 등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Wee) 클래스"란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을 말한다.
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5. "위(Wee) 스쿨"이란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을 말한다.
6.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이하 "전문상담사 등"이라 한다)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근무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 클래스) ①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위(Wee) 클래스의 장이 된다.

② 위(Wee) 클래스의 장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클래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적응 학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
4. 학교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5.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담 지원
6. 그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 센터) ① 위(Wee) 센터가 설치된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은 상담전문기관 등에 위(Wee)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위(Wee) 센터의 장이 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 위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Wee) 센터의 장은 당해 교육감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Wee) 센터의 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p>2.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통계 관리, 평가 및 개선</p> <p>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한 학업중단속려제 지원</p> <p>4. 상담 내용 및 위기수준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위기학생 치유 등을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항</p> <p>5. 사업 종사자 연수, 컨설팅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p> <p>6.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p> <p>7.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속 상담지원</p> <p>8. 그 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6조(위 스쿨) ① 교육감이 지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위(Wee) 스쿨의 장이 된다.</p> <p>② 위(Wee) 스쿨의 장은 학생의 학교복귀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p> <p>1. 위(Wee) 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p> <p>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라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p> <p>3. 지역사회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p> <p>4. 그 밖에 학생 상담, 교육,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위(Wee) 스쿨의 장은 제2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제12조(상담기록관리시스템) ① 사업기관의 장은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p>

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의 항목으로 위기청소년의 성별을 수집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p>
--

7) 시험 등 평가

각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정하여 관할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다. 위 지침은 지필평가나 수행평가에 관하여 평가 문제 출제, 고사 관리, 수행평가 방법, 수행평가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교육청의 지침을 검색해 확인해 본 결과 평가와 관련하여 성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따로 없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부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행정권한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4호). 그러나 이 규정에서도 성별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 기관, 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제3항 제4호)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기존 OMR카드 기재 방식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CBP)로 전환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컴퓨터 기반 평가 체험 페이지에서는 성별 정보를 따로 수집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다.⁷⁹⁾

79)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포털 (<https://inaea.kice.re.kr/siteMain/cmputrExamAnocnt.do>)
2023. 11. 18. 확인.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포털 > 컴퓨터 기반 평가 안내 > 학업성취도평가 체험하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시험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응시자 ID	naeatest452886903	성 명	평가원(초)
학 교 명	모의고사장(초)	학년/반/번호	1학년 1반 99번
평가 시간	제한 없음	평가 문항	19문항

시험시작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년, 2023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제공되는 OMR 답안지에 응시자의 남과 여 두 가지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02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요강, 5쪽

- 매 교시 답안지에는 자신의 성명을 왼쪽부터 빈칸 없이 표기함
- 1, 2교시 답안지에는 자신의 선택과목을 해당란에 표기함
 - ※ 1교시(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 2교시(수학)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 4교시 한국사 답안지에는 자신의 성별을 해당란에 표기함

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요강, 5쪽

- 매 교시 답안지에는 자신의 성명을 왼쪽부터 빈칸 없이 표기함
- 1, 2교시 답안지에는 자신의 선택과목을 해당란에 표기함
 - ※ 1교시(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 2교시(수학)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 4교시 한국사 답안지에는 자신의 성별을 해당란에 표기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4교시 한국사영역에 제공되는 OMR 답안지에 응시자의 성별을 남과 여로만 기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2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사용된 이 사건 OMR 답안지

④ 한국사(보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답안지

4 교시 한국사 영역

성명: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수험번호: 학교(학원)번호 반 번호

성명 (방카표인 필독부터 기재)

문번 답 란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모의평가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공개한 모의평가 실시요강에서는 한국사 답안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로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과 함께 성별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2023년 6월 모의평가 실시요강, 8쪽		
한국사	성명, 수험번호, 성별, 생년월일을 반드시 표기	※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모의평가에서 OMR로 수집한 성별정보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수집한 주민등록정보를 토대로 성적확인서에 성별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모의평가 결과확인서 예시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확인서 예시 ⁸⁰⁾																																																																																																								
<p>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수험번호</td> <td style="width: 10%;">성별</td> <td style="width: 10%;">생년월일</td> <td style="width: 10%;">사·도</td> <td style="width: 20%;">학교명(하위명)</td> <td style="width: 10%;">반</td> <td style="width: 10%;">번호</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영역 구분</td> <td>한국사</td> <td>국어</td> <td>수학</td> <td>영어</td> <td>탐구</td> <td>제2외국어/한문</td> </tr> <tr> <td>선택과목</td> <td colspan="2">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표준점수</td> <td colspan="2">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백분위</td> <td colspan="2">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등급</td> <td colspan="2">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p><small>※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수험생 본인의 실력을 중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본 성적 자료를 대학입학전형 자료나 타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small></p>	수험번호	성별	생년월일	사·도	학교명(하위명)	반	번호								영역 구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수험번호</th> <th>성명</th> <th>성별</th> <th>출신고교(반 또는 졸업 연도)</th> </tr> </thead> <tbody> <tr> <td>12345678</td> <td>홍길동</td> <td>04.09.05. 남</td> <td>한국고등학교 (9)</td> </tr> <tr> <th rowspan="2">영역</th> <td>한국사</td> <td>국어</td> <td>수학</td> <td>영어</td> <td>탐구</td> <td>제2외국어/한문</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h rowspan="2">선택과목</th> <td>회법과 적문</td> <td>확률과 통계</td> <td> </td> <td>생활과 윤리</td> <td>지구과학 I</td> <td>독일어 I</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h>표준점수</th> <td>131</td> <td>137</td> <td> </td> <td>53</td> <td>64</td> <td> </td> </tr> <tr> <th>백분위</th> <td>93</td> <td>95</td> <td> </td> <td>75</td> <td>93</td> <td> </td> </tr> <tr> <th>등급</th> <td>2</td> <td>2</td> <td>2</td> <td>1</td> <td>4</td> <td>2</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22. 12.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p>	수험번호	성명	성별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 연도)	12345678	홍길동	04.09.05. 남	한국고등학교 (9)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회법과 적문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I	독일어 I							표준점수	131	137		53	64		백분위	93	95		75	93		등급	2	2	2	1	4	2
수험번호	성별	생년월일	사·도	학교명(하위명)	반	번호																																																																																																			
영역 구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수험번호	성명	성별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 연도)																																																																																																						
12345678	홍길동	04.09.05. 남	한국고등학교 (9)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회법과 적문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I	독일어 I																																																																																																			
표준점수	131	137		53	64																																																																																																				
백분위	93	95		75	93																																																																																																				
등급	2	2	2	1	4	2																																																																																																			

80) EBS(2022. 11. 21.), [2023 수능] 원점수·표준점수·백분위·등급 ‘수능 성적표’ 읽는 법, <https://www.ebsi.co.kr/ebs/ent/enta/retrieveEntNewsView.ebs?bbsCd=B011&datNo=142017>

8) 졸업증명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의 졸업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공립, 사립학교의 경우 졸업증명 발급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학교 구분	증명의 종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가. 재학 증명 나. 성적 증명(초등학교 및 그에 상응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라. 제적(정원 외 관리) 증명 마. 졸업(예정) 증명 바. 교육비 납입 증명

실무에서는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발급한 졸업증명서가 그 학교가 사립인지 공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서식으로 나타나며, 해당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대상자의 성별이 드러난다. 또한 졸업 후에 학교명이 바뀌었을 경우, 졸업 정보에는 재학시의 학교명이 기재되고 발급주체로는 변경된 학교명이 기재되고 있다. 따라서 ‘여자학교’, ‘남자학교’ 등의 성별표기가 공학으로 변경되어 사라졌더라도, 졸업증명서상에는 여전히 성별이 드러나는 학교명이 함께 기재된다.

중학교 졸업증명서



문서확인번호 : [Redacted]



발급번호 : [Redacted]

졸업증명서

성 명 : [Redacted]
주민등록번호 : [Redacted]-2 [Redacted]
졸업대상번호 : 제 [Redacted] 호
학 교 : 부일여자중학교

위 사람은 [Redacted]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09월 24일

신라중학교장



담당부서	신라중학교
담당자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를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문서확인번호



발급번호 :

졸업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졸업대장번호 : 제 호
학 교 : 혜화초등학교

위 사람은 년 월 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09월 24일

혜화초등학교장



담당부서	혜화초등학교
담당자	
전화번호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하실 수 있습니다.



9)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청소년의 성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 및 실제로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도 사진을 부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성별 정보가 수집되고 노출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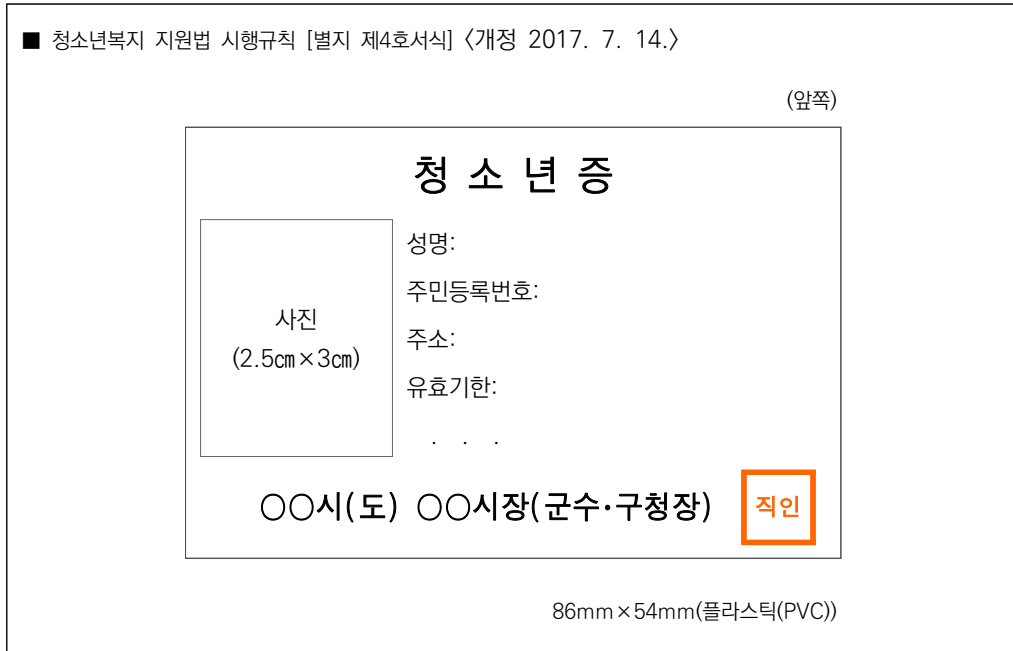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초·중·고 재학 중 []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다. 한계 및 문제점

1)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정보)의 광범위한 사용

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는 순간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변경되지 않는 개인식별번호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으로, 주민등록법은 1962년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⁸¹⁾ 주민등록번호는 일정한 생성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크게 생년월일로 구성된 앞의 6자리와 그 외 개인정보로 구성된 뒤의 7자리로 나뉜다. 이때 뒤의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성별과 출생연대를 나타낸다. 예컨대 1900년대에 출생한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을, 2000년대에 출생한 남성은 3번, 여성은 4번이라는 첫 번째 숫자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 뒤로 네 자리로 구성된 지역번호, 동일한 날짜, 동일한 성별, 동일한 지역에서 출생신고의

81) 주민등록법(법률 제1067호, 1962. 5. 10., 제정) 【제정·개정이유】 참조

순서를 나타내는 여섯 번째 숫자, 주민등록번호 조립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일곱 번째 숫자로 구성된다.⁸²⁾

이 중 성소수자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뒤의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인 성별번호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성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의 특성을 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이나 인증을 넘어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본인의 특성까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의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채택’할 것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하였으나,⁸³⁾ 현재까지 해당 개선권고를 반영한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 학교 내 주민등록번호의 지나친 수집으로 인한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절차에서도 제반 서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상희는 학교 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 및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였는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이 조사가 2005년에 이뤄진 조사임을 감안하였을 때, 당시와 달리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이 도입된 현재는 아래 나열된 사항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데이터베이스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⁸⁴⁾

1) 학생 관련 서식

가정환경조사서, 고입전형 성적표(고등학교), 신입생 기초조사(중학교), 입학원서(고등학교), 입학원서(예술 고등학교), 입학원서(외국어고등학교), 입학원서(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응시원서(중학교), 전퇴확인서(초등학교), 고등학교전입학배정원서, 고등학교편입학배정원서, 교류학생수강신청서, 교류학생지원서및기숙사 입사신청서, 등록포기각서, 복학신청서, 입학포기각서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 자퇴신청서, 자퇴원서, 졸업증명서, 학생증, 학생증발행신청서, 학자금용자 신청서(대학생), 휴학신청서, 사이버연수수강신청서, 수능성적

82) 김민호(2011), **정보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와 개인식별번호체계의 공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

83) 국가인권위원회(2014),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

84) 한상희 외(2005),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표, 생활기록부, 학적부(대학교), 검정고시영문합격성적증명서교부원, 고입·고졸 과목합격증명서, 수상확인원, 입학추천서, 학생기초조사서 (중략)

3) 취업 관련 서식

고교장추천서, 연계교육대상자추천서, 산업체근무경력확인서, 산업체재직증명서, 입상실적증명서, 재능추천서, 지도교사추천서, 체육특기자추천서(일반), 추천서, 취업·부업추천서발급신청서, 취업동의서, 학교장추천서 (중략)

5)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보유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회원관리,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2) 관행적인 학생의 성별정보 수집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입학시 취학명부부터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학생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까지 관행적으로 학생의 성별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02년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행정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행정정보뿐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정보, 입·진학정보, 보건정보 등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인정보는 개별 자료별로도 다량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더 큰 정보를 도출하기도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기본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성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별을 적도록 하고,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도 외국인등록번호처럼 성별을 나타내는 7번째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입학시 사진과 졸업시 사진을 수집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외관과 성별 표현에 관한 정보가 수집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취학명부를 작성한다. 취학명부는 입학대상자 정보로 학교에 전달되므로, 이때부터 학생의 성별정보가 간접적으로 교육당국에 의해 수집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원서를 통해 성별정보를 수집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생은 건강검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할 때 작성하는 문진표에는 학생의 성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학생건강, 구강검사결과통보서, 신체능력검사에서 각각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와 시험에서는 성별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성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반드시 성별정보 수집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처럼 학교 생활 중에 작성·관리되는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데이터에 학생의 성별이 포함된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될 뿐만 아니라, 아예 성별 정보를 특정하여 수집하기도 한다. 시스젠더가 아닌 학생들은 지정성별과 불일치함에 대한 위화감이나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성별 분리와 차별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학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첫 원칙은 애초에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은 학생 개인의 등록된 성별 정보 중 수집되어야 할 필요성을 구별하여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건강정보에서 여성과 진단과 관련된 정보, 상담에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 그 자체와 관련된 상담기록을 남기는 경우 외에 성별정보가 수집되어야 할 필요는 별로 없다. 일반적인 교육활동이나 행정실무에서는 학생으로서 지위만이 문제될 뿐, 성별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성별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르치거나, 다른 평가를 하지 않으며, 급식이나 출결관리 등을 다르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여남비율을 고려한 반 배정이나 기숙사 방 배정 등이 필요하다면 그 때 일시적으로 조사하고 기록을 삭제해도 충분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담임교사도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열람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수집된 성별에 대한 정보도 쉽게 열람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이 있는데도 학생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적 목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익명화된 통계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도, 통계의 목적에 따라 성별정보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3) 이분법적인 성별정보 수집

위의 성별정보를 수집하는 대부분의 절차에서, 성별을 남과 여로만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 시험 답안지에 성별을 두 가지 코드로만 설정하기 때문에 두 성별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트랜스젠더나 두 성별로 정체화하지 않은 논바이너리 청소년인 경우에 지정성별을 강요받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진정보를 수집하므로 성별표현이나 성별정체성이 간접적으로 공개된다.

이렇게 수집된 성별정보는 출석부 순서나 이름표의 색상 등 성별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제도를 통해 외부에 표시된다. 성별에 따라 색상을 달리함으로써 명찰의 색상만으로 성별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하는 학교들도 여전히 있다. 명찰 색상이나 출석부의 사진 등으로 인해서 지정성별이 공개되어 아우팅을 당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차별의 위험도 커진다. 출석번호를 지정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도 지정성별을 암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찰을 고정형으로 달게 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는 명찰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범죄의 타겟이 되기 쉽기 때문이었다. 외부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이 인권 침해나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개인정보의 삭제 및 수정

학교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기록되는 당해 학년도가 지나면 정정이 불가능하다. 취업이나 입시 등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가 사용되는 경우 공정성을 위해 기록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재요령>에서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정해놓고 있다. 신입생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성명 등의 기본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으므로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이하다. 다만,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출신학교별로 학교생활기록이 완성되어 보관되므로, 기록의 정정이 필요하다면 각급 학교를 찾아 각각 정정해야 한다.

문제는 개명과 달리 성별 변경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공문서가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개명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개명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졸업 전이든 후든 기본정보를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개명의 사례를 유추하면 성별 변경의 경우에도 공적인 문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법원의 성별정정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서로 성별을 증빙하기 어렵다. 개명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 정정을 구하는 성별정정허가는 아직까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 아니며, 신체에 대한 외과적이고 침습적인 조치 등 엄격한 요건을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성별 변경은 보다 유연하게 증빙서류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출신학교명도 포함이 되는데 단성학교에서 공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입학당시의 학교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여학교인 경우 학교명으로 성별을 직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졸업증명서에는 학교명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한 개인 정보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주민등록등본 등을 비롯해 정부가 발행하는 대부분의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숨기면서 발행할 수 있다.

5) 사생활의 비밀 침해

2023. 9. 1.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물품의 소지를 의심만으로도 조사하고,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규정들이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수색'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유사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근거로 법률에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위 고시는 행정규칙만으로 수색을 허용하며, 사법부의 감독도 받지 않으므로 의회유보원칙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대상 학생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자유권협약 제9조 제1항),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 자유권협약 제17조 제1항,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제1항)를 '우려'나 '의심' 등의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물품의 보관 규정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타 법령이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여 예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과도하게 대상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게다가 물품 보관 이후 환부나 보상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조사나 보관 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암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소지품이 공개되거나 보관됨으로써 아우팅을 당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성별표현과 관련한 물건들은 보관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공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이 위해가 된다는 해석은 자의적이다. 최근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에 관련된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인 예이다.

라. 해외 사례⁸⁵⁾

1)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대안

가) 개인식별번호에 성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사례⁸⁶⁾

(1) 미국 : 사회보장번호(SSN)

미국은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개인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나, 사실상의 신분번호인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다. 현재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고용기록, 병원기록, 학생기록, 신용도 기록을 포함해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 신청 등에도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회보장번호는 출생 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된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발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총 9자리 숫자 중 앞의 3자리는 지역을, 가운데 2자리는 지역 중 행정 집단을, 뒤의 4자리는 개인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85)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번역: 김세희

86) 김민호(2011), 앞의 글, 361 내지 363쪽에서 발췌 및 정리

(2) 네덜란드 : 시민서비스번호(BSN)

네덜란드는 2007년 시민서비스번호(BSN: Burger Service Number)를 도입하였는데, 해당 번호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민서비스번호는 조세, 복지 등 공공 업무를 포함하여 취업, 은행계좌 개설, 병원 이용, 수당 신청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활용된다. 외국인 역시 취업, 의료혜택을 위해서는 시민서비스번호의 발급이 필요하다.

한편 시민서비스번호 역시 9자리 숫자로 구성되는데, 해당 숫자의 조합에는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출생한 형제, 자매의 경우 첫 4자리 숫자가 동일하다.

나) 사회 영역별로 고유의 식별번호체계를 운영하는 사례⁸⁷⁾

(1) 호주

호주에는 전국민에게 부여되는 보편적 개인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 의료카드(national medicare card)가 사용되고 있다, 해당 의료카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인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이용되며, 그 외 여권, 출생증명서, 거주증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나, 이를 연동할 국민적 개인식별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세 영역에서는 개인 및 기업을 식별하기 위한 세금납부번호(tax file number)가 존재하나, 조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엄격하게 규제된다.

(2) 독일

독일 역시 전국민에게 부여되는 보편적 개인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16세 이상의 모든 독일 거주민에게 부여되는 ID카드 상 고유번호가 있으나, 그 이용범위가 제한되어 보편적 식별자로 작용하지 않는다. ID카드 등을 통한 신원확인을 하지만, 해당 ID카드 번호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영역과 상호 연동하고 있지 않다. 여권, 운전면허증, 조세, 복지 등 사회 각 영역은 고유의 식별번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여권이 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ID카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은 하나, ID카드번호를 저장하지는 않는다.

87) 정청래(2014), **주민등록번호 제도 문제와 해결방안**,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발췌 및 정리

(3) 헝가리

헝가리 헌법재판소가 1991년 보편적 개인식별번호가 위헌이라고 결정(15/1991)한 이래, 민주헌법(2011년부터 ‘기본법’으로 대체)으로 보편적 개인식별번호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인구등록소(central population registry)가 출생시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개인식별자(Personal Identifier)가 존재하나, 이를 포함한 카드는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국가신분증등록증(National ID card)은 개인식별자(Personal Identifier)를 포함하지 않으며, 개인별로 고유 카드 번호가 부여된다. 통상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은 ID 카드, 여권, 운전면허증이다. 헝가리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회 각 영역별로 고유의 식별번호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2) 개인정보수집의 필요성과 수집 목적 개시

미국 연방 교육부는 등록(취학)을 위해서 당해 학군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소’, 학령기를 증명하기 위한 ‘출생연월일’이나 ‘연령’, 학생의 동일성을 구분하기 위한 ‘사회보장번호(SSN)’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에서 수집하도록 안내하는 정보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수집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는 입학 을 위해 인종(Race)이나 민족(Ethnicity)을 밝히도록 하고 있지만 인종이나 민족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입학 을 거부할 수는 없다.⁸⁸⁾

뉴욕주 뉴욕시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아동이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나이, 예방접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성별 정보는 입학한 학교에서 수집하긴 하지만, 입학 전 등록을 위한 필수정보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⁸⁹⁾

8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2012), *Information on the Rights of All Children to Enroll in School*,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dcl-factsheet-201101.html#:~:text=Proof%20of%20Age.&text=maximum%20age%20requirements.-,School%20districts%20typically%20accept%20a%20variety%20of%20documents%20for%20this,or%20previously%20verified%20school%20records>

89) NYC Department of Education(n.d.), *How to register*, <https://web.archive.org/web/20121016134340/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NewStudents/Peak+Enrollment.htm>

미국의 학생기록은 각 주에서 사기업이 개발한 교육행정시스템을 구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성별정보를 수집하고 있긴 하다. 다만 다음 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교적 넓게 열어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생활기록부나 학생성적표는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지만, 미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신자가 특정된 기록이므로 대상자의 성별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크지 않다(박균열 외, 2014).

미국 연방법인 가족의 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은 학생의 교육기록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다.⁹⁰⁾

미국 연방 교육부 홈페이지 중 FERPA 소개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20 U.S.C. §1232g; 34 CFR Part 99) is a Federal law that protects the privacy of student education records. The law applies to all schools that receive funds under an applicable program of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가족의 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에서는 교육 관련 기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프라이버시 이익과 교육 관련 기록에 존재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학생의 상담이나 치료 정보 등은 다른 사람이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학생의 정보는 학부모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1232g. Family educational and privacy rights

(a) Conditions for availability of funds to educational agencies or institutions; inspection and review of education records; specific information to be made available; procedure for access to education records; reasonableness of time for such access; hearings; written explanations by parents; definitions

9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2021. 8. 25.),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https://www2.ed.gov/policy/gen/guid/fpco/ferpa/index.html>

(4) (B) (iv) records on a student who is eighteen years of age or older, or is attending an institution of postsecondary education, which are made or maintained by a physician, psychiatrist, psychologist, or other recognized professional or paraprofessional acting in his professional or paraprofessional capacity, or assisting in that capacity, and which are made, maintained, or used only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treatment to the student, and are not available to anyone other than persons providing such treatment, except that such records can be personally reviewed by a physician or other appropriate professional of the student's choice.

(b) Release of education records; parental consent requirement; exceptions; compliance with judicial orders and subpoenas; audit and evaluation of federally-supported education programs; recordkeeping

(1) No funds shall be made available under any applicable program to any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which has a policy or practice of permitting the release of education records (o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other than directory information, as defined in paragraph (5) of subsection (a)) of students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ir parents to any individual, agency, or organization,

섹션 1232g. 가족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법

(a) 교육 기관이나 학교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교육 기록의 검사 및 검토;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정보; 교육 기록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 접근에 대한 합리적인 상황; 청문회; 학부모의 서면 설명; 정의
 (4) (B) (iv) 18세 이상인 학생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 출석하는 학생의 경우,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다른 인정받는 전문가 또는 보조전문가가 전문 또는 보조전문가로서 활동하거나 그 역할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고 유지하며 학생에 대한 치료 제공과 관련될 때만 사용되며, 이러한 기록은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으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의사 또는 학생의 선택하는 적절한 전문가에 의해 개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b) 교육 기록 공개; 부모 서면 동의 요구; 예외; 법정 명령 및 소환 준수; 연방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감사 및 평가; 기록 보존

(1) 학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 기록 (또는 하위 조항 (a)의 (5)항에서 정의된 디렉토리 정보 이외의 내부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을 개인, 기관 또는 조직에게 공개 허용하는 정책 또는 관행이 있는 교육 기관 또는 학교에는 어떠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에서도 자금이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성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서는 취학을 위해서 성별정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일단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학교에서 성별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때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성별확인양식(Student Gender Identification Form)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양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성별에는 여성(F)과 남성(M) 외에 논바이너리(X)가 포함된다.

뉴욕시 성별확인양식(Student Gender Identification Form) 중	
<p>Gender Identification</p> <p>Select the option that best describes your student's gender. The option you select does not have to match your student's birth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tion. Select only one op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F – Female: My student identifies as female <input type="checkbox"/> M – Male: My student identifies as male <input type="checkbox"/> X – Neither Female nor Male: My student does not identify as female or male (for example, identifies as non-binary, gender expansive, or gender fluid)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하는 교육정보관리시스템인 Power School의 경우,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칸 중 성별(Gender)은 학생의 성정체성 선호에 따른 성별(preferred gender)을 기록한다. 시스템 기본설정으로는 여성과 남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지만, 추가기능을 활성화하면 논바이너리도 선택할 수 있다. 등록된 성별과 성정체성에 따른 성별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여 시스템에 legal gender 입력 칸도 별도로 존재한다.⁹¹⁾

Powerschool California 정보입력칸 기재 안내 중 발췌	
Gender	<p>Choose the student's preferred gender from the pop-up menu:</p> <p>(M) Male</p> <p>(F) Female</p> <p>(X) Non-Binary</p> <p>This value can also be populated on the CALPADS Student Information page in the Preferred Gender field.</p>

91) PowerSchool California(n.d.), *Adding Student Demographics*, <https://ps-compliance.powerschool-docs.com/pssis-ca/latest/adding-student-demographics>

	<p>Required for CALPADS</p> <p>Note: (X) Non-Binary is not available by default. The non-binary gender value must be enabled at Start Page > District > District Info > Gender Preferences.</p>
Legal Gender	<p>This field overrides student gender on state reports. This field is only required if legal gender does not match preferred gender.</p> <p>If the student's legal gender matches the student's preferred gender, click Copy to populate the legal gender field. If the student's legal gender does not match the student's preferred gender, choose the student's legal gender from the pop-up menu.</p> <p>This field can also be populated on the CALPADS Student Information page.</p> <p>Required for CALPADS</p>

*CALPADS: 캘리포니아 종단 학업성취도 데이터 시스템(California Longitudinal Pupil Achievement Data System)

4) 성별정보의 수정

처음 성별정보를 입력한 후,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기록에 등재된 성별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뉴욕시 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경을 위해 법적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⁹²⁾

뉴욕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홈페이지

How do I change my records to reflect my name and/or gender? ▲

If you are attending an NYC public school, your school can change the name and gender stated on your records. If you left school or graduated from an NYC public school, contact the last DOE school you attended. You can change your name and/or gender on your records without legal documentation. Ask your school about requesting changes to your records.

92) NYC Department of Education(n.d.), *Student Records and Transcripts*, <https://www.schools.nyc.gov/learning/student-journey/student-records-and-transcripts>

학생이 자신의 성별정보를 교육정보관리시스템(ATS: Automate The School)에서 변경(Updating)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며 된다. 앞서 본 것처럼 뉴욕시는 논바이너리로 학교 등록이 가능한데, 변경할 때도 논바이너리 선택이 가능하다. 이름도 학생이 선택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⁹³⁾

Student Name and Gender Change Request Form

Updating Your Student's Gender Marker

Gender does not appear on student- and school-facing permanent records. To update your student's gender in the limited places where gender is recorded, select the option that best describes your student's gender. The option you select does not have to match your student's birth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tion. Select only one option:

F – Female: My student identifies as female

M – Male: My student identifies as male

X – Neither Female nor Male: My student does not identify as female or male (for example, identifies as non-binary, gender expansive, or gender fluid)

Updating Your Student's Chosen Name

If your student uses a chosen name (a different first and/or last name than what appears on legal documentation), you can choose to have this name displayed on report cards, transcripts, attendance rosters, and other important documents.

I would like to update my student's chosen first name to: _____

I would like to update my student's chosen last name to: _____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070조에서는 학생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되었거나, 학생의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정을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지정한 자가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성별정보도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된 것으로 보아 수정할 수 있다.

California Code, Education Code – EDC § 49070 (Current as of January 01, 2023)

Following an inspection and review of a pupil's records, the parent or guardian of a pupil or former pupil of a school district may challenge the content of any pupil record.

(a) The parent or guardian of a pupil may file a written request with the superintendent of the school district to correct or remove any information recorded in the pupil's written

93) NYC Department of Education(n.d.), *Student Name and Gender Change Request Form*,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name-and-gender-change-request-form>

records that the parent or guardian alleges to be any of the following:

- (1) Inaccurate.
 - (2) An unsubstantiated personal conclusion or inference.
 - (3) A conclusion or inference outside of the observer's area of competence.
 - (4) Not based on the personal observation of a named person with the time and place of the observation noted.
 - (5) Misleading.
 - (6) In violation of the privacy or other rights of the pupil.
- (b)(1)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a request pursuant to subdivision (a), the superintendent or the superintendent's designee shall meet with the parent or guardian and the certificated employee who recorded the information in question, if any, and if the employee is presently employed by the school district. The superintendent shall then sustain or deny the allegations.

학생은 학생증, 출석부, 학생연감(졸업앨범) 등에 기재되는 자신의 이름과 호칭을 원하는 이름과 성별 호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학생의 성별과 이름이 법적으로 변경되지 않아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등록된 이름은 공식 기록에만 표시되도록 한다.⁹⁴⁾

ACLU South California에서 설명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

NAMES AND PRONOUNS

You have the right to be addressed by the name and pronouns that correspond with your gender identity. This is true even if your name and gender are not legally changed. Your school should use your chosen name and pronouns on everything possible—your student ID, class attendance rosters, yearbook, and more. Your legal name should only appear on your official file.

94) ACLU South California, *LGBTQ STUDENT RIGHTS IN K-12 CALIFORNIA PUBLIC SCHOOLS*, <https://www.aclusocal.org/en/know-your-rights/transgender-student-rights-school>

마. 법제도 개선방안

1)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대안

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개인식별번호 체계 도입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보편적 개인식별번호를 활용하는 국가도 존재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성별과 같은 개인정보가 해당 번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계속해서 활용한다면, 해당 주민등록번호에 성별과 같은 개인정보가 표현되지 않도록,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

나) 교육 영역을 위한 별도 식별번호 체계 도입

한편 해외 사례에서는 사회의 각 영역별로 고유한 식별번호 체계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번호를 사회 모든 영역에 통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경우 역시 다수 존재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교육 영역에서 학생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식별번호 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학교 관련 각종 기록에 활용한다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ESFA(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ESFA,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개인의 교육 관련 정보인 PLR(personal learning record)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정보에는 자격 및 학점 프레임워크(QCF), 영국 및 영국 연방의 대학입학시 필요한 자격 정보(A levels), 중등교육 자격시험 정보(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중등 학교 졸업 자격 정보(BTEC), 학위, 자격증 등 일반 및 직업과 관련된 것이 포함된다.⁹⁵⁾

다) 식별번호가 아닌 여타 기존 정보를 통한 학생 신원 확인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내 서식 및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식별번호 체계를 활용하지 않고, 학생의 이름, 학번, 학년, 반 등의 여타 정보를 통하여 신원

95) 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2023. 6. 29.), *Accessing your personal learning record*, <https://www.gov.uk/guidance/how-to-access-your-personal-learning-record>

을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한상희(2005) 역시 추후 진학이나 취업에 활용하는 각종 추천서, 확인서의 경우에도 학교, 학번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점 및 실제로 등록관리나 학생 진로 및 취업관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학내 활용 목적의 서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학번을 기본 식별자로 이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한상희 외, 2005). 비록 한상희(2005)의 제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학내 활용 정보와 교육부·시도교육청 활용 정보 간 통합이 이뤄지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생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을 특정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관행적인 학생의 성별정보 수집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제16조 제1항 본문),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본문). 기재요령 역시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간을 초과한 개인정보를 재생할 수 없도록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취학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공시하면서 각 정보의 수집목적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집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성별정보가 교육이나 학교행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재요령>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려면 성별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굳이 성별정보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이나 의료, 상담 등의 목적이 있다면 이에 한정해 수집하되 다른 자료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삭제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학생의 보호자 정보(직업, 이름, 주민번호, 가족 형태 등)를 수집하였으나, 필요 이상의 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행태를 반성하며, 보호자 정보의 수집 관행을 중지한 선례가 있다. 2018년도 학교생활 기록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43호)은 인적사항에 학생의 개인정보 외에도 가족상황란을 두고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2019년도 학교생활 기록 및 관리지침부터는 이를 삭제하였다. 2019년부터는 아예 학생의 가족관계를 조사·기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⁹⁶⁾ 기재요령에서는 전산화 이전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시에도 부모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1쪽

파.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이전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 부모 정보와 관련된 사항(교육부 훈령 제243호 기준 인적사항 내 가족상황 및 특기사항)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보호자 정보를 삭제한 것처럼 성별정보의 수집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1항의 인적·학적 사항 중 ‘성별’을 삭제하고, 기재요령에서도 인적사항 부분의 ‘성별’을 삭제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3) 이분법적인 성별정보 수집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처럼 학생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지정성별과 별도로 성별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뉴욕시처럼 여남 이분화된 성별이 아니라 논바이너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생활규정을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성별에 따라 명찰색이나 형태를 달리하지 않도록 하고, 출석부 등에 성별을 표시하거나 성별에 따라 출석번호가 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96) 송옥진(2018. 12. 17.), **학생부에 부모정보 기재 금지, 수정기록 졸업 뒤 5년간 보관**,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171370075153>

4) 개인정보의 정정

애초에 성별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성별정체성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고, 이분법적인 인식을 벗어나 논바이너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더라도, 개인 학생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공문서를 요청하려면,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탐색하면서 차츰 더 정치하게 정체화해간다는 점에서 공적 문서로 불가역적인 정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다른 공문서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안에서만 사용되는 문서들(예를 들어 출석부, 졸업앨범, 학생증 등)에 한해서 학생이 원하는 성별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신청을 받아 수정을 승인해주면 충분하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시에서 다른 법적문서 없이 신청만으로 성별표시를 정정해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졸업 후 외부에 현출되어야 하는 교육 공문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병원의 진단이나 투약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성별 변경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입증을 가계게 할 필요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졸업 후 자료에 성별 표시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생활의 비밀 침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소지품 조사(검사)와 분리 보관(압수)을 금지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처럼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전 동의를 거쳐 허용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소지품 조사와 분리보관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8항과 제9항을 시급히 삭제하여야 한다.

교직원 등에게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하여 소지품 중 성별표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물품을 공개하거나 압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6) 법률 개정안

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소수자 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 교직원이나 보호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교직원들에게 비밀보장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제23조의3에서는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정보의 보호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성소수자 학생의 정보에 대한 교직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비밀보호 의무의 상대방에는 보호자를 포함하고,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여, 성소수자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p> <p>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신 설〉</p>	<p>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u></p>

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에게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다른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 건강검사기록에 기재되어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에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 소수자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 ② (생략) 〈신 설〉</p>	<p>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에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이 본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에 대한 열람·변경·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u></p>

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안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7항). 이에 따라 〈학교건강검사규칙〉은 학교 건강검사 시 문진표 및 이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 작성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는 아래와 같이 학생의 성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 건강검사 시 별지 제1호의2 ~ 4서식에 따라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문진표 서식에는 성별을 표시하여야 함⁹⁷⁾
- 학생건강,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호의5 ~ 6서식에 따라 학생의 성별을 표시하여야 함⁹⁸⁾

97)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98)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 학생의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에도 성별을 기재하여야 함⁹⁹⁾

따라서 위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의2 ~ 6서식에서 성별을 기재하도록 한 항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학교건강검사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개정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중 제7조 제1항은 학생의 이름과 주소 외에도 성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4항은 사진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성별정보가 반드시 수집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7조 제1항의 ‘성별’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정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원칙적으로는 성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만일 수집하는 경우라도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내심의 주관적 의사를 진지하게 표시하는 신청서를 통해 기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인적·학적사항)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p>	<p>제7조(인적·학적사항)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p>
<p>제17조(기타사항) ① ~ ③ (생략) ④ ‘사진’란에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cm×4.5cm, 전산자료)을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p>	<p>제17조(기타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p>

99)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자료의 정정)</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 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9조(자료의 정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거나 <u>성별에 한해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정정이 가능하며</u>,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도 인적·학적 사항 수집 정보 중 ‘성별’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변경해야 한다. 기재요령 중에는 외국인의 경우에 성별을 표시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 자리를 성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판 기재요령 기준 제19쪽에서 제21쪽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제3항에 “학생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별표현과 관련된 사실”을 작성을 삼가야 할 유의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의 수정 및 정정 방법과 관련해 내심의 의사에 따라 진지하게 작성한 신청서로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추가한다.

III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학교라는 공간에서 ‘없는 존재’로 무시되던, 직·간접적인 혐오폭력의 피해자라면 드러나던, 있을 자리가 없어 떠나야 했던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도 안전하고 차별없이 학교를 다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되었다. 쉬는 시간 마음 놓고 학교 화장실에 달려가는 논바이너리 학생을 상상해 보고, 성소수자 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힘을 겪은 레즈비언 학생의 곁에 그를 지지하는 학생, 교직원, 상담사, 학교 관리자가 하나 둘 모여 한 팀을 이루는 모습을, 트랜스젠더 학생이 졸업장을 받고 뿌듯해 하는 날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자 애썼다. 2023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몇 줄 새겨진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마저도 지우려 하는 혐오에 맞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 전반에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더 구체적으로, 더 또렷하게, 더 고유하게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와 포용적 학교의 가능성을 새겨 넣는 과정은 생명력 넘치는 작업이었다.

일례로 이번 연구에서 집중한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숙소) 외에 학교 시설 중 ‘성별에 따라 구분된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에서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집담회에서도 중간중간 참여자들 간에 화장실 외의 성별 구분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진 점이 인상적이었다.

구분	세부내용
급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실이 남자칸, 여자칸으로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전에 한번 패싱이 잘 되나 시험해보려고 남자칸에서 배식받고 있었는데 하필 같은 반인 친구가 저보고 여자칸으로 가라고 말해서 좀 불편했습니다. • 급식실에서 줄을 설 때 남자/여자 줄로 구분해서 섰음. • 학교 급식실에 자리가 많지 않아서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날은 남자 먼저, 이 날은 여자 먼저 이런 식으로 점심 먹는 순서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입구에서 이걸 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성별에 얽매어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급식실이 성별이분법에 관련되어 먹는 곳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친한 친구들과는 못먹고 강제로 지정성별에 맞춰진 곳에서 식사를 강요받았습니다.
학급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번호를 앞번호(법적남성), 뒷번호(법적여성)으로 분리함. 체육시간이나 조회시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로 서게 함. •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번호를 부여할 때 남녀를 구분했습니다. 그 때문에 시험을 칠 때마다 성별 불쾌감을 느껴야만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진정 사실이 알려지면 '페미다', '메갈이다'와 같이 소문이나 평생에 걸쳐 신상 털기, 언어/신체적 폭력 등에 노출되며 남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혹여나 고등학교 시절 번호를 대학교 학우가 물어볼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기타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을 설 때 여자와 남자로 구분되게 서고, 졸업 사진 등을 찍을 때 여자는 꽃받침, 남자는 최고 포즈로 찍게 했다. 그게 가장 불편하였다. • 체육시간이나 학교 행사 때 여학생, 남학생으로 분류된 줄에 서는 것. • 무조건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으로 뽑아야 되는 회장, 부회장 규칙 • 체육 수업. 수업 과정은 똑같지만 쓸데없이 성별 분리한다. 여학생들도 '남학생'(나)랑 수업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 건강검진. 기본적으로 남녀를 나누어서 하는 건 어쩔수 없기는 하지만,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역시나 디스포리아가 느껴짐. 지금 현행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강당 같은 것을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받게 하는 것에서는 적어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하복이 여학생과 남학생 디자인이 너무 달라서 심하게 디스포리아를 느꼈다.

설문조사에 일방향으로 수집된 기록에서는 ‘학교 내 성별 구분 시설(시스템)’로 인하여 ‘불편하고 힘들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집단회에 모인 청소년들은 서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학교 경험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나누는 과정 속에서, ‘대체 왜 그런지(성별로 나누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굳이’, ‘이해가 안 되는’ 학교의 성별 구분에 대해 서로 무척 공감하고 맞장구치며 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식실에서의 성별구분) 저희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테이블을 아예 따로 해놓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줄 서는 건 남녀 구분 없이 서고, 음식 받는 것도 구분 없이 하는데 자 리만 다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C/09년생/트랜스남성/공학-합반)

“사물함 같은 정말로 성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굳이 구분되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실제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서 그냥 제발, 왜냐면 저희는 인원수에 비해서 실제로 재학 중인 학생 수가 훨씬 적은 편이라 이런 시설물들이 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사물함 위치를 다른 데로 써도 되는지 허락을 맡을까 싶기도 했다. 가. (후략)” (D/08년생/트랜스남성/공학-합반)

더 나아가서는 다른 청소년들의 경험을 듣고 그동안은 상상하지 못했던 포용적인 학교의 모습을 희망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큰 힘이 되었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다양한 경험을 들어보니까, 호르몬(트랜지션)도 하셨다는 분도 있고, 화장실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쓸 수 있었다는 분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나도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고요. 이런 혐오의 근원이 이해를 못하거나 그냥 무식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C/09년생/트랜스남성/공학-합반 경험)

본 연구는 2021년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명동과 공동법률사무소 이체가 공동으로 연구한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의 후속 작업이다. 지난 연구는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는 교육 관련 법률 중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법률은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 관련 현행 법령을 모두 살펴 ‘차별금지’를 넘어 성소수자 학생이 구체적으로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떤 법령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조사·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시설이나 학교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의 운용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개정하여 성소수자 학생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모두의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필요한 성별정보 수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를 아예 신설 조항으로 과감하게 삽입하고,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놓일 수 있는 특유한 어려움(아우팅, 가해취약성, 성소수자 인권감수성에 기반한 상담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조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기에, 개정안의 문구나 내용은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전문가 자문, 청소년 당사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더 많이 받아 계속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번 연구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는, 무엇보다 포용적 학교 환경을 함께 꿈꾸는 멋진 분들의 자문과 해외 법제도 조사 및 번역으로 도움을 받았다. 법과 제도의 변화가 절실하지만, 그것만으로 과연 실질적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삶이 달라질까, 학교가 나아질까, 오히려 법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백래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순간마다 각자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차별금지’를 명시한 단 한 줄이 갖는 힘에 대해 강조해주셨다. 해외에서 놀라울 정도로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져 왔지만 동시에 이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분쟁도 끊이지 않았음을, 그럼에도 ‘어떤 학생도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그들의 또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선언한 법과 제도가 근거가 되어 국가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편에 섰던 사례¹⁰⁰⁾를 공유해주셨다.

100)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Doe v. Boyertown Area School District” (2019.5.28.)

- 201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보이어나 지역 교육청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별에 맞게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 시설 이용 옵션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자 트랜스젠더가 아닌 학생들의 그룹은 헌법에 따라 트랜스젠더인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번 연구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특정한 방법은 지금까지 평등이 상담을 통해 수집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는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된 정보, 기존 국내 연구와 뉴스 보도 등을 통한 것이었다. 하지만 거듭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 학생 등에 집중하여 이루어진 실태조사가 없고, 최신 연구가 부족하여 개정안을 도출할 때에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세 가지 주제 외에도 ‘교육과정/인식개선’, ‘국가의 책무/인권보장 매커니즘’ 등의 주제 또한 포용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시간적·역량적 한계로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 이후에도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와 개정 운동 등이 이루어져 포용적인 학교로의 실질적인 변화가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 보이어타운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또한 공용 화장실과 라커룸에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28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지원하는 보이어타운의 정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원은 화장실과 라커룸에 있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존재가 헌법이나 펜실베니아 주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별도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든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주홍색 ‘T’로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며 공립학교에 다니는 대가로 이를 견뎌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IV 개정안

1.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교육시설법
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학교체육 진흥법
9.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1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1. 학교건강검사규칙
1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의 원칙

가.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누구나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성을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거나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을 정체화할 수 있도록 존중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나.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성을 이유로,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거나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 괴롭힘, 따돌림, 혐오폭력 등에 단호히 반대하여야 하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면서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학생의 개인정보로서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성별정보의 수집이나 이분법적인 성별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상담교사 등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학생의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에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불필요하게 성별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도 이분법적으로만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취학명부 등 공적장부에 기재된 법적성별과 다른 성별로 정체화한 학생이 성별에 관한 자신의 학교 기록을 열람,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영하되, 변경 전 기록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아우팅을 예방하여야 한다.

라. 학교 시설(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과 교복, 반 배정, 반 번호 등 학교 운영, 체육 등 교과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 시스템, 교과과정 등이 성별이분법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성중립적이어야 한다. 학교 내에 성별로 구분된 시설이 있을 경우, 학생이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에 따라 자유롭게 안전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한 차별, 폭력, 낙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적인 지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의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마.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정보, 성소수자와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육자원(도서관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인간의 다양한 성적 발달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¹⁰¹⁾.

바. 성소수자 학생을 이해하고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자료가 포함된 교사연수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학생을 직접 만나는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를 포함한 교육 관계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한다. 이들이 아동·청소년 성소수자의 비가시성과 적대적 환경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연구에 기초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가지며, 성소수자를 인간의 다양성 안에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¹⁰²⁾ 체계적인 교사연수 및 다양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01) 김지혜(2016), 166면

102) 김지혜(2016), 167면

사.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소수자 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경험을 파악하여 그 존재를 인지하고, 모든 학교 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¹⁰³⁾.

103) 김지혜(2016), 166면

2. 교육기본법

법률 제 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p> <p>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07. 12. 21.]</p> <p>〈<u>신 설</u>〉</p>	<p>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u>나이</u>, 사회적 신분, <u>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u>, 인종, 경제적 지위, <u>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u>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u>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3. 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다른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에 기재되어 불이익을 겪고 있음.

이에 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을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 건강검사기록에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소수자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 등).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 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 기록에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이 본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에 대한 열람·변경·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 ② (생 략)</p> <p>〈신 설〉</p>	<p>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u>은 <u>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u>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 ② (생 략)</p> <p>〈신 설〉</p>	<p>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이 본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에 대한 열람·변경·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u></p>

4. 교육시설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공간과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 학교 교육과정, 위생 및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성평등' 가치의 중요성도 나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시설이 성인지적으로 설계, 설치될 것과 학교 구성원들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법률 제 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의 공간과 시설은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고, 모든 학생이 시설 이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신 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생태, 친 환경, 성평등,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1. - 4. 생략</p> <p><u><신 설></u></p>	<p>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 --. 1. - 4. (현행과 같음)</p> <p>5. <u>학교의 공간과 시설은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고, 모든 학생이 시설 이용에 있어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성되어야 한다.</u></p>
<p>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p> <p>① 생략</p> <p>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③ 생략</p>	<p>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성평등</u>,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 '성중립적인 모두의 화장실'로 설치하되, ----- ----- ---
(2) 생략	(2) 생략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삭제
(4) - (5) 생략	(4) - (5) 생략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음. 또한 차별사유에 근거한 괴롭힘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포섭하지 아니하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특히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폭력들이 명시적으로 금지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 등은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조심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의 목적 조항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추가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유형을 추가하고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등).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차별사유에 근거한 괴롭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1의4. “차별사유에 근거한 괴롭힘”이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는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6조의5(성소수자 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성소수자 학생인 경우에 심의과정에 성소수자 지원기관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성소수자 학생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u>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u>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u>차별사유에 근거한 괴롭힘</u>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 1의3.(생략)	1의2.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u>1의4. “차별사유에 근거한 괴롭힘”이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성별정체성,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④ (생략)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 <신 설>	⑤ <u>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는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⑤ ~ ⑦ (생략)	<p>⑥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⑦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⑧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 설>	<p>제16조의5(성소수자 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성소수자 학생인 경우에 심의과정에 성소수자 지원기관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③ 제20조에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성소수자 학생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 제9조에서는 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매년 전수조사의 형태로 시행되는 실태조사에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의 피해 실태 및 활용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제16조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기구 운영에 있어서 구성원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에 있어서 인권적 운영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라 전담기구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은 핵심적인 자질임. 더불어 전담기구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 인권 감수성은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제17조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이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년 2회 전수조사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및 예방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 및 전담기구의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 감수성 보장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③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성소수자, 다문화, 장애 등 소수자 학생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재발방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신설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② 전담기구 구성원은 성소수자, 장애, 다문화 등 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한 인 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인권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애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2. 학교폭력 예방교육시 성소수자, 장애,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9조(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동일></p> <p>③ <u>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성소수자, 다문화, 장애 등 소수자 학생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u></p> <p>④ <u>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재발방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u></p>
<p>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p> <p><신 설></p> <p>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u>전담기구 구성원은 성소수자, 장애, 다문화 등 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u></p> <p>③ <u>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인권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u></p> <p>④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p> <p>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p> <p><u>〈신 설〉</u></p> <p>2. ~ 4. (생략)</p> <p>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p> <p><u>〈현행과 동일〉</u></p> <p>2. 학교폭력 예방교육시 성소수자, 장애,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3.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p> <p>4.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p> <p>5.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p> <p>6.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u>학교폭력 유형과 성소수자, 장애,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 내용</u>,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8. 학교체육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2) 생략</p> <p>(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p> <p>(4) - (5) 생략</p>	<p>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u>사위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은 1인용으로 확보되어야 한다.</u></p> <p>② (현행과 동일)</p> <p>(2) 생략</p> <p>(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u>성별중립 화장실은 제외</u>)</p> <p>(4) - (5) 생략</p>

9.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② (생략)</p> <p>〈신 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p>	<p>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학생선수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1인용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기숙사를 배정해야 한다.</u></p> <p>④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p>

1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침 제7조 제1항은 학생의 이름과 주소 외에도 성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4항은 사진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름, 학령기를 확인하기 위한 생년월일, 학군을 확정하기 위한 주소지 외에 성별정보는 반드시 수집이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없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성별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집근거도 없음. 한편 제19조 제2항은 인적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정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성별정체성은 내심의 주관적 의사와 관련이 있고, 발달과정에서 점차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규정들로 인해 성소수자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음.

이에 현행지침을 개정하여 성별정보, 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 개인의 내심에 의한 신청에 따라 학교 내 기록의 범위에서 성별 변경을 허용하고자 함.

교육부 훈령 제 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성별’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수정함
제17조제4항을 삭제함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거나, **성별에 한해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인적·학적사항)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p>	<p>제7조(인적·학적사항)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p>
<p>제17조(기타사항)</p> <p>① ~ ③ (생 략)</p> <p>④ '사진'란에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cm×4.5cm, 전산자료)을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p>	<p>제17조(기타사항)</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9조(자료의 정정)</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9조(자료의 정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거나 성별에 한해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11.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학교보건법 제7조 제7항). 이에 따라 학교건강검사규칙은 학교 건강 검사 시 문진표 및 이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 작성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는 아래와 같이 학생의 성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 건강 검사 시 별지 제1호의2~4 서식에 따라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문진표 서식에는 성별을 표시하여야 함¹⁰⁴⁾
- 학생건강,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호의5~6 서식에 따라 학생의 성별을 표시하여야 함¹⁰⁵⁾
- 학생의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에도 성별을 기재하여야 함¹⁰⁶⁾

따라서 위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1호 및 별지1호의 2~6 서식에서 성별을 기재하도록 한 항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학교건강검사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104)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05)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106)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1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판 기준 제35쪽 인적·학적 사항 수집 정보 중 성별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변경함. 기재요령 고등학교판 기준 제37쪽 ① 학생정보 중 외국인의 경우 “※ 성별은 '남' 또는 '여'로 구분하여 입력함.” 부분을 삭제하고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를 “뒤 7자리는 '0000000'으로 입력하며”라고 수정함.

기재요령 고등학교판 기준 제19쪽에서 제21쪽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시 유의사항에서 제3항에 “학생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별표현과 관련된 사실”을 추가함.

기재요령 고등학교판 기준 제37쪽의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아래에 “※ 성별 정정은 내심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학생이 작성한 신청서를 근거로 함”이라고 추가함. 또 140쪽에는 제1항 가목 1) 가)를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성별에 한하여 내심의 의사에 의한 신청서, 진단서 및 처방전 등의 자료를 말한다.”라고 정정함.

1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가. 성소수자 학생 면담시 유의사항 제시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장애, 중도입국, 외국인, 탈북 학생 등과 면담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소수자 학생과의 면담 유의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 내 교사 등의 인권 감수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지만 필요시 전문가의 동행 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소수자 학생 관련 사항의 경우에도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전담기구 사안조사 시 유의 사항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 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입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입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 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그림 6]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제시된 사안조사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관련 법과 시행령을 정리한 문서로 기능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의 영역을 세분하고 각 영역에 따른 유의사항을 예시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 및 지원 내용 포함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피해 및 가해 학생 조치(제2장)에 장애, 다문화, 탈북 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에 명시되어 있으나 다문화, 탈북 학생의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이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안에서 다문화, 탈북 학생이 편견에 의한 폭력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며, 더불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 탈북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탈북 학생 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 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탈북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켜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또는 탈북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 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7]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다문화, 탈북학생의 보호와 지원내용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 성소수자 학생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땃동
전화 (02) 924-1224
인쇄업체 한학문화
(02) 313-7593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성소수자 학생을 중심으로

